

#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관담회

1차 (23.07.18)

가족 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2차 (23. 08. 03)

'가족'해방 프로젝트

- '이상한 정상가족'을 넘어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 목 차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간담회 ①

## 가족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일시: 2023년 7월 18일(화) 19:30~21:30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속기: 전승욱

사회 : 유량(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발표 1. 국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 2

허민숙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발표 2. 법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 7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 발표 3. 공소시효 폐지 이후, 다른 사회적 기반 만들기 ..... 20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 함께 이야기하기 ..... 24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간담회 ②

## '가족' 해방 프로젝트 -'이상한 정상가족'을 넘어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일시: 2023년 8월 3일(목) 19:30~21:30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속기: 황윤우

사회 : 동은(한국성폭력상담소 성문화운동팀)

### 발표 1. 친족성폭력은 왜 드러나기 어려울까? ..... 36

심이경(〈나는 안전합니다〉 저자, 공폐단단 활동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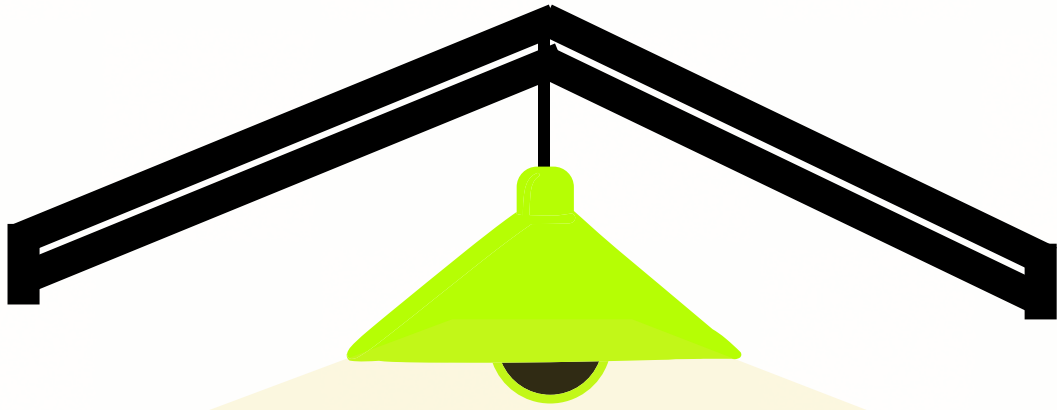
**발표 2. 폭력의 구조로서 '이성애 정상가족 제도' ..... 40**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발표 3. '정상가족'과 불화하며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 49**

유화정(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함께 이야기하기 ..... 53**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 찾기 연속간담회 ①

---

# 가족 관계 내 '성폭력' 모르는 국가에 질문하기



가족이 뭐길래



# 국가는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가?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 Part I

### 1. 친권상실제도의 비효율성

친족성폭력 피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친권상실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단서는 “친권상실신고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친권상실청구 또는 후견인 변경 결정을 예외 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러한 모호성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공분을 자아냈지만 사안이 아닌 경우 친권상실 청구 자체가 시도조차 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비가해부모가 가해부모에게 협조적일 때 가해부모의 친권상실이 피해 청소년 보호에 별다른 실익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점이다. 친족성폭력의 경우 친인척이 피해 자녀를 회유 내지는 협박하여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진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처벌불원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가해부모뿐 아니라 후견인으로 지명받은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이러한 2차 가해 행위를 금지시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친권상실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비보호적인 비가해부모를 제재하는 규정의 부재는 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있는 보호시설의 장이 친권상실 청구 요청이나 후견인 지정 제도를 잘 활용하지 않는 요인이 된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가해자에게 친권상실 선고를 하는 경우 청소년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 또는 친족에게 인도하거나 성폭력 상담시설 내지는 보호시설에 인도하도록 하는 등의 보호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청소년 관련 보호시설 운영자가 청소년의 법적 대리인 자격을 갖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조항은 원가족을 피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제한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결정적 사유가 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 2. 요보호아동의 즉시분리 규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응급조치(1~4호)<sup>1)</sup>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응급조치를 강행규정으로 두면서

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 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는 단서문구를 추가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동의 의사를 제외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률 또는 규칙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비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아동청소년가족지원법」(Child, Youth and Family Service Act)은 신체적, 성적, 정서적 학대 및 방임, 그리고 기타 사유의 해로움을 겪고 있는 아동을 요보호아동(child in need of protection)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신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로부터 성학대 피해를 입었거나, 성학대의 위험이 있는 아동은 법률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며, 보호조치에는 아동을 자신의 집과 부모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포함된다. 아동복지사(child protection worker)는 법률 81(7)조항에 따라 건강과 안전이 우려되는 16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을 법원 명령 없이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아동의 동의를 필요한 연령은 16세 또는 17세이다.

미국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ve Services: CPS)는 아동이 가정에서 머무는 것이 안전하지 않고 즉시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법원 명령 없이 아동을 일단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후 CPS는 법원에게 가정으로부터 아동을 즉시 분리시켰어야 할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족구성원으로부터의 지속적인 성학대 위험 또는 아동이 성적으로 학대당했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 Part II

### 1. 친족성폭력 피해와 공소시효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규정되어 있다. 형법 기본 형량에 따라 1년~25년까지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성범죄 각 혐의에 따라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되고, 공소시효가 지나면 범죄혐의가 있어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 법률 제252조에 따라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시점에서 진행된다. 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두어 13세 미만의 아동 및 신체·정신적 장애가 있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공소시효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된다. 과학적 증거 등 입증 증거가 발견된 성폭력범죄는 공소시효는 10년 연장된다.

공소시효의 이점은 정의를 증진시키는 것, 판결에서의 기본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범죄가 합리적인 시간 안에 고소되지 않으면 증거의 손실이 증가하고, 목격자의 기억이 사라지는 것, 물리적 증거가 소실되는 것, 증언의 증거가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에 기반해 공소시효의 필요성이 설명된다. 신뢰할만한 증거에 기반하여 유죄선고를 내리고, 죄 없는 사람에게 잘못된 판결을 하지 않는다는 사법 시스템의 목적을 강화하는 데 있어 공소시효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불확실성, 소송비용, 사법 업무량의 감소라는 이점에서도 제도의 필요성이 옹호되기도 한다.

그러나, 공소시효의 이러한 이점과 효용성에도 불구하고 중대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있

---

1) 1호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호 아동학대행위자를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3호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호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다. 결국 강간이나 친족성폭력은 주요 범죄가 아님을 시사하는 것이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공소시효로 인해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잇따랐다. 공소시효 배제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성범죄 피해와 폭로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친족성범죄의 경우 그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 미국 6명 중 1명은 18세 이전 가족 내 성학대 피해 경험이 있음
- 아동 성범죄피해자의 70~95%는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않음
- 82.9%는 어린 시절 성범죄 피해에 대해 신고하지 않음
- 아동성범죄 여성 피해자의 25.4%, 남성 피해자의 44.9%가 누군가에게 피해 사실을 의논하는데까지 걸린 시간은 20년 이상
- 피해 사실을 드러내는데 30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
- 아동 성학대가 폭로되는 데는 52년이 걸림
- 사례) 5~14세까지 가족으로부터 성학대 당한 Rosanne Sliney는 48세에 고소
- 14세 때 강간당한 Heather Conner는 50세에 고소, 그러나 43세까지가 공소시효였음

## 2. 성범죄 공소시효의 문제점

공소시효는 가해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해석이 있다. 국가가 정한 시간 안에 피해 회복을 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법원으로 향하고자 할 때, 그 문을 닫아버리고,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라는 의미이다. 피해자를 위협하고, 협박하고 상처 낸 가해자를 보호하는 제도, 또한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반복범죄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가해자를 피해생존자의 과거에 숨어 있게 하는 제도이고, 피해생존자의 증언을 막아버리는 제도로 기능하기도 한다.

친족성폭력 가해자의 3%만 대가를 치른다는 조사 결과가 시사하는 것은 이들 범죄자가 평생 다른 피해자를 찾고, 가해를 반복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발각된 성범죄자들에게 냉혹하게 굴기보다, 숨겨져 있는 가해자들을 잡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 국가는 국민이 언제 정의를 원하는지, 정의에 다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그 기간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 3. 미국의 SOL(Statute of Limitations) 입법 현황

### 가. 현황

미국의 44개 주에서 모든 아동성범죄에 대한 형사법상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연방정부 및 15개 주에서는 모든 아동성범죄에 대한 민사법상의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24개 주에서는 기한이 만료된 민사소송을 위한 Revival or Window 법을 제정하였다.

Revival Law(window law)란 이미 민사상 공소시효가 지난 아동성범죄 피해자가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1)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기간을 허용하고 2) revival 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입법되었다.

revival window 법 제정 운동은 1990년대 시작되었고, 그 결실을 2002년에 맺게 된다. 캘리포니아가 2002년 처음 revival window 법을 제정하였고, 이후 18개 주정부 및 워싱턴 D.C.에서 재소송을 허용하였다. 다만, 그 기간과 대상자에 대한 규정은 주 정부 별로 상이하다.

예를 들어 2016년 유타주는 3년의 소송 기간을 허용하고, 피해자가 53세에 이르기까지 가해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네바다는 가해자에 대해 영구적으로 소송을 허용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외 관계자에 대한 소송은 38세까지 할 수 있도록 입법하였다.

#### 나. 배경

미국에서 아동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문제시된 시점은 2002년도이다. 보스턴 글로브의 스포트라이트팀이 카톨릭 아동 성범죄 논란을 보도한 해이다. 사회에서 가장 신뢰할만한 기관에 속하는 카톨릭 교구에서 발생한 아동성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대중의 시선과 인식을 변화시키는 전환점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보도는 다른 폭로를 이끌었다. 명문 사립초등학교, 스포츠계, 올림픽 선수단, YMCA, 소년소녀클럽과 같은 곳에서의 아동성범죄 사건이 폭로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 사건의 피해자들 대부분이 민·형사상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었다.

#### 다. SOL 폐지까지의 전개

미국에서 아동성범죄가 공론화된 것은 SOL이 피해자의 정의 실현을 가로막고, 가해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실체 발견의 확산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에 2002년 이후 아동성범죄에 대한 SOL 개혁에 대한 요구가 빗발치게 되었고, 아동을 위험에 빠뜨리는 개인보다 시스템에 집중할 것이 요구되었다.

또한, 입법가들이 성학대 관계에서의 권력 관계에 대해 인지하기 시작하였다.

- 1) 일정 연령의 아동은 피해 폭로 이전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게 됨
- 2) 아동성학대는 가해자에 대한 기소가 담보되어야 할 만큼 충분히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게 됨

어떤 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두지 않은 주가 거론되었고, 살인, 결과가 사망에 이른 방화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 즉 중대 사건에 대해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것과 달리 강간이나 친족성폭력은 중대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시작되었다.

그 대안으로 공소시효를 없애거나, 성년이 된 이후 공소시효가 카운팅 되기 시작하는 입법(tolling)이 마련되었다.

#### 라. Forget and Forgive에 대응하기

한편, 미국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아닌 친족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전면 폐지는 아직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 다만, 대략 10개 주 정부에서 강간(rape)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친족성폭력에 대한 SOL이 없는 주는 대략 11개 주 정도이다. 최근 뉴욕주는 1급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였고, 2급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두었다.

*공소시효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정당화는 최소한 친족성폭력에 관하여서는 전혀 설득적이지 않다.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는 부모/자녀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침해로 인해 희생된 자이다. 아동을 대가로 부모를 보호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정의의 왜곡이다(Hammer v. Hammer, 418 N.W.2d23 Wis.App.1987)*

시간이 가해자를 지키도록 하는 공소시효는 가해자의 반복범죄를 허락한다. 명단에 의한 자들에 의한 성범죄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공소시효 폐지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를 줄여야 한다. 형량을 추가하는 것, 성범죄자 고지 대상을 확대하는 불완전한 방법보다는 아직 식별되지 않은 가해자를 처벌함으로써 모두를 위한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법은 가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1. 헌법 제36조 1항의 의미 -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 호주제도 헌법불합치결정사건을 중심으로  
(헌법재판소 2005. 2. 3. 2001헌가9 등(병합) 전원재판부 결정)

#### 심판대상 조문

민법 (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78조(호주의 정의)** 일가의 계통을 계승한 자, 분가한 자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하거나 부흥한 자는 호주가 된다.

**제781조(자의 입적, 성과 본)** ①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부가에 입적한다. 다만, 부가 외국인인 때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고 모가에 입적한다.

②, ③ 생략

**민법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② 생략

③ 처는 부의 가에 입적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 또는 호주승계인인 때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 할 수 있다.

④ 생략

#### 1) 헌법의 우위

- 헌법은 국가사회의 최고규범이므로 가족제도가 비록 역사적·사회적 산물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헌법의 우위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
- 가족법이 헌법 이념의 실현에 장애를 초래하고, 헌법 규범과 현실과의 괴리를 고착시키는데 일조하고 있다면 그러한 가족법은 수정되어야 함
- 우리 헌법은 제정 당시부터 특별히 혼인의 남녀동권을 헌법적 혼인질서의 기초로 선언함으로써 우리 사회 전래의 가부장적인 봉건적 혼인질서를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는 헌법적 결단을 표현함
- 현행 헌법에 이르러 양성평등과 개인의 존엄은 혼인과 가족제도에 관한 최고의 가치 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음
- 헌법 전문과 헌법 제9조에서 말하는 “전통”, “전통문화”란 역사성과 시대성을 띤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 질서, 인류의 보편가치, 정의와 인도 정신 등을 고려하여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하여야 하며, 가족제도에 관한 전통·전통문화란 적어도 그것이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 이념인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는 한계가 도출되므로, 전래의 어떤 가족제도가 헌법 제36조 제1항이 요구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에 반한다면 헌법 제9조를 근거로 그 헌법적 정당성을 주장할 수는 없음

## 2) 호주제도의 위헌성

### 가) 양성평등원칙 위반

- 호주제는 “호주를 정점으로 가(家)라는 관념적 집합체를 구성하고, 이러한 가를 직계비속남자를 통하여 승계시키는 제도”, 달리 말하면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가족집단을 구성하고 이를 대대로 영속시키는데 필요한 여러 법적 장치로서, 단순히 집안의 대표자를 정하여 이를 호주라는 명칭으로 부르고 호주를 기준으로 호적을 편제하는 제도는 아님
- 호주제는 성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초한 차별로서, 호주승계 순위, 혼인 시 신분 관계 형성, 자녀의 신분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는 제도

### 나) 개인의 존엄 위반

-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을 존중하는 가운데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음. 혼인과 가족생활은 인간 생활의 가장 본원적이고 사적(私的)인 영역. 이러한 영역에서 개인의 존엄을 보장하라는 것은 혼인·가족생활에 있어서 개인이 독립적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고, 혼인과 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의미임
- 혼인과 가족생활을 국가가 결정한 이념이나 목표에 따라 일방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민주주의 원리와 문화국가 원리에 터잡고 있는 우리 헌법상 용납되지 않는다. 국가는 개인의 생활양식, 가족 형태의 선택의 자유를 널리 존중하고, 인격적·애정적 인간관계에 터잡은 현대 가족관계에 개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호주제는 당사자의 의사나 복리와 무관하게 남계혈통 중심의 가의 유지와 계승이라는 관념에 뿌리박은 특정한 가족관계의 형태를 일방적으로 규정·강요함으로써 개인을 가족 내에서 존엄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가의 유지와 계승을 위한 도구적 존재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는 혼인·가족생활을 어떻게 꾸려나갈 것인지에 관한 개인과 가족의 자율적 결정권을 존중하라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부합하지 않음

### 다) 변화된 사회환경과 가족상

- 오늘날 가족관계는 한 사람의 가정(호주)과 그에 복속하는 가족(家屬)으로 분리되는 권위주의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원 모두가 인격을 가진 개인으로서 성별을 떠나 평등하게 존중되는 민주적인 관계로 변화하고 있고, 사회의 분화에 따라 가족의 형태도 모와 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재혼부부와 그들의 전혼소생자녀로 구성되는 가족 등으로 매우 다변화되었으며, 여성의 경제력 향상, 이혼율 증가 등으로 여성이 가구주로서 가정의 역할을 맡는 비율이 점증하고 있음

라) 헌법과 일치하지 않는 가족법에서의 혼인 규율 제정사

- 헌법상 혼인의 보장은 사회적 문제였던 남녀차별의 철폐에 중심적 의미를 둔 것이었지만, 실제 민법의 가족법 제정사를 보면 종전의 관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할지, 헌법정신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정할지, 점진적으로 개혁해 나가는 방향으로 제정할지 의견대립이 극심하였음.
- 결국 한국전쟁 후 김병로 위원장이 직접 초안을 작성하면서 가족법 입법에 있어서는 개별 국가 및 민족의 윤리와 역사적 전통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고, 헌법의 기본이념인 남녀평등에 대해서는 정치, 사회, 문화영역에서의 균등한 기회 보장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이고, 가정의 윤리, 존속간의 윤리 등에 적용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음. 집안에서 부모·자식 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평등을 찾는 것은,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것이라고 주장하였다고 함.
- 호주제, 가부장적 여성차별적 혼인제도, 동성동본금혼, 친권, 양자 문제, 상속문제 등에서의 남녀차별의 문제를 수정하기 위하여 소장파 기초위원들, 여성계, 학계, 이태영 변호사 등에 의한 개선 건의와 반대운동이 이어졌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관습존중론에 가까운 가족법이 제정. 헌법 가치와 충돌하는 문제를 안게 되었음. 민법은 1957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 시행됨.(이재희, 혼인의 헌법적보장 - 헌법 제36조 제1항을 중심으로(2017), 36쪽).

2. 민법상 친족·가족의 범위, 가족의 권리와 의무

<p><b>친족 편</b></p> <p><b>제767조(친족의 정의)</b>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p> <p><b>제768조(혈족의 정의)</b>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p> <p><b>제769조(인척의 계원)</b>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p> <p><b>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연혁판례문헌</b> ①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②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 배우자가 재혼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p> <p><b>제777조(친족의 범위)</b>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p> <p><b>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b></p> <p><b>제779조(가족의 범위)</b></p>
--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①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② 부부의 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 그러나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양부모)가 친권자가 된다.

② 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 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 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회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회가 자(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⑤ 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⑥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913조(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의무가 있다.

#### **제914조(거소지정권)**

자는 친권자의 지정한 장소에 거주하여야 한다.

####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 **제924조(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① 가정법원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여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그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를 선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친권의 일시 정지를 선고할 때에는 자녀의 상태, 양육상황,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③ 가정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친권의 일시 정지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녀,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미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후견감

독인의 청구에 의하여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제974조(부양의무)

다음 각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

1.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
2. 삭제 <1990.1.13>
3. 기타 친족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 상속 편

####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 3. 상황별로 알아보는 법 현황<sup>2)</sup>

#### 1) 간병 등 돌봄

- 노인, 장애인, 환자 간병 등 돌봄의 역할을 우선 가족의 역할로 전제함. 국가는 이를 보조하는 방식.
- 가족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거나 부양가족으로 상정되는 범위를 준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음(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등).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목적: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2) 이하 김현경 외, 법이 호명하는 가족의 의미와 한계(2019) 축약·발췌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기요양급여 제공의 기본원칙)** ②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의 심신상태·생활환경과 노인등 및 그 가족의 욕구·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장기요양급여는 노인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8조(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고려사항)** 공단은 장기요양인정서를 작성할 경우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을 정하는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및 생활환경
2. 수급자와 그 가족의 욕구 및 선택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시설 현황

▶ **노인복지법**

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 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항:

**제3조(가족제도의 유지·발전)**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2. 주·야간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3. 단기보호서비스 :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후략)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고용에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함과 아울러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2) 부양

- 1촌 직계혈족과 배우자에게 부양의무를 지우고 있음. 자신이나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는 국적 취득할 수 없음.
- 연금법에서는 부양의무 관계에서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던 이들에 대하여 유족으로서 수급권을 인정함.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5.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다만,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한다.

**제3조(급여의 기본원칙)** ① 이 법에 따른 급여는 수급자가 자신의 생활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그의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활용하여 최대한 노력하는 것을 전제로 이를 보충·발전시키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우선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보호의 수준이 이 법에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를 잃지 아니한다

### ▶ 국적법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일반귀화 요건)** 외국인이 귀화허가를 받기 위하여서는 제6조나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4. 자신의 자산(資産)이나 기능(技能)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 공무원연금법

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p><b>제3조(정의)</b>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2. "유족"이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배우자(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한정하며, <u>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u>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p> <p>나. 자녀(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다. 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라. 손자녀(孫子女, 퇴직일 이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손자녀는 제외하되, 퇴직 당시의 태아는 재직 중 출생한 손자녀로 본다. 이하 같다)</p> <p>마. 조부모(퇴직일 이후에 입양된 경우의 조부모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p> <p>제31조(유족의 우선순위) 급여를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p>
<p><b>▶ 국민건강보험법</b></p> <p>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적용 대상 등)</b> ①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p> <p>② 제1항의 피부양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u>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u>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li> <li>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li> <li>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과 그 배우자</li> <li>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li> </ol>

**3) 사망**

○ 사망신고는 동거하는 친족, 또는 동거자까지 넓게 인정하고 있지만, 시신의 매장, 화장 여부 등 장사에 관한 권한은 연고자의 법정 순위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음. 유언으로도 변경이 불가능함.

<p><b>▶ 장사 등에 관한 법률</b></p> <p><b>제2조(정의)</b></p> <p>16. "연고자"란 사망한 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 목의 순서로 행사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명 이상이면 최근 친의 연장자가 우선 순위를 갖는다.</p> <p>가. 배우자</p> <p>나. 자녀</p> <p>다. 부모</p>
---

<p>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p> <p>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p> <p>바. 형제·자매</p> <p>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p> <p>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p>
<p><b>▶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b></p> <p><b>제85조(사망신고의무자)</b></p> <p>① 사망의 신고는 동거하는 친족이 하여야 한다.</p> <p>②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의 신고를 할 수 있다.</p>

**4) 중요한 신변 사항에 대한 통지 대상 및 구제 청구권자**

- 체포·구속 등 신변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통지 대상 및 구제 청구권자, 민법상 가족의 범위보다 확대 규정

<p><b>▶ 출입국관리법</b></p> <p>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4조(보호의 통지)</b>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법정 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변호인 또는 용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대리인등이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서면에 적고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b>제55조(보호에 대한 이의신청)</b></p> <p>① 보호명령서에 따라 보호된 사람이나 그의 법정대리인등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p>
<p><b>▶ 형사소송법</b></p> <p><b>제30조(변호인선임권자)</b></p> <p>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②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p> <p><b>제87조(구속의 통지)</b></p> <p>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 30조제2항에 규정한 자 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p> <p><b>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b></p> <p>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p>

<p>다.</p> <p>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p>
<p><b>▶ 인신보호법</b></p> <p>목적: 이 법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인하여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고 있는 개인의 구제절차를 마련함으로써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구제청구)</p> <p>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되거나 적법하게 수용된 후 그 사유가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수용되어 있는 때에는 피수용자, 그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이하 "구제청구자"라 한다)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그 법률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없음이 명백하여야 한다.</p>

**5) 형사처벌의 특례 규정**

○ 가족의 학대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형사처벌의 특례 규정 등을 두고 있음

<p><b>▶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b></p> <p>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p> <p>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p> <p>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p> <p>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p> <p>라. 동거하는 친족</p>
<p><b>▶ 형법</b></p> <p><b>제151조(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b> ①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p> <p><b>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b>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p>

<p>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p> <p>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p> <p>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p> <p><b>제323조(권리행사방해)</b> 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p> <p><b>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b>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p>
--

**6) 보상**

○ 국가가 역사적 사건이나 국가에 대한 책임에 기반하여 질병, 장애를 가지거나 사망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유족에게 하는 법률

<p><b>▶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b></p> <p>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禮遇)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b>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p> <p>② 제1항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p>
<p><b>▶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b></p> <p>목적: 이 법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b>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음.</p>
<p><b>▶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b></p> <p>목적: 이 법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禮遇)를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b>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음.</p>
<p><b>▶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b></p> <p>목적: 이 법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p>

몰함에 따른 참사의 발생원인·수습과정·후속조치 등의 사실관계와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며,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4·16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에 승선한 사람 중 희생자 외의 사람(세월호의 선원으로서 여객의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탈출한 사람은 제외한다)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 4.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는 차별

- 주거정책에서의 차별: 주거의 단위인 '세대'의 정의가 법적 가족을 준용하고 있는 점,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신혼부부 특별공급 요건부양가족 가산점 등에서의 차별,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임차인 사망시 임차권 승계 권리 배제.
- 세금/상속에서 배제: 〈소득세법〉의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상속공제 비적용 등 상속 및 증여권한에서 광범위한 배제.
- 〈국민건강보험법〉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배제.
- 〈가정폭력처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가정구성원에서 배제: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제한함. 이로써 법 밖의 가족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사회적 지원에서 배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가족돌봄지원 배제: 일가족 양립 영역의 제도 전반에서 지원 대상과 자격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가족관계등록법」과 「민법」에 기반을 두고 있음.
- 친양자 입양에서의 비혼동거 차별: 독신자의 가족생활의 자유(가족구성에 대한 권리) 침해.
- 가족으로서의 일상적 업무를 대리할 자격에서 배제: 〈농업협동조합법〉 의결권이나 〈공직선거법〉 등 선거권 등록 등.
- 재난/위험/사망시 가족으로서의 권리에서 배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상 해외재난시 가족의 안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격에서 배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연고자 자격에서 배제.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의 정책지원 대상도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으로 규정.
- 가족에게 부여되는 예외적 권리에서 배제: 〈국세징수법〉상 동거가족의 생활필수품은 압류금지 재산에서 제외된다거나, 〈형법〉 상 범인은닉과 동거가족의 특례, 각종 과징금 납부 시 본인이나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는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가능, <병역법> 상 가족의 간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할 복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 가족 위급상황으로 인한 작업의 면제 등

- 보상, 보훈, 연금수급권, 지원금 등에서의 차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근로기준법(근로자로 업무상 사망한 경우)」, 「고용보험법(구직급여수급자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족(배우자) 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보상금, 보험금, 연금 수령 불가, <근로기준법>의 가족수당, <근로복지기본법>의 생활안정자금 지원에서 배제.
- 군인, 경찰 등을 포함한 공무원의 경우 국가가 제공하는 각종 가족지원정책에서 배제.

## 공소시효 폐지 이후, 다른 사회적 기반 만들기

수수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 활동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 생활인의 다수가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라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당연히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는 왜 집을 떠날까?’ 이 질문의 답은 다음과 같다. 가족의 가해를 고발하는 순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지지받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성폭력은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가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폭력을 가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그렇기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권력관계는 비대칭적이고 불평등하다. 친족성폭력 피해도 마찬가지이다. 가해자는 가족 구성원 중 권력자인 경우가 많으며, 피해자는 피해를 고발함과 동시에 가족 내 권력자와 맞서 싸우게 된다. 지위도, 발언력도, 경제력도 희박한 피해자가 가족 내 권력자인 가해자의 폭력을 알리고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가족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가족은 곧 집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기에 가족을 고발한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은 생존자임과 동시에 자기 삶을 오롯이 일구는 개척자이기도 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삶을 지원하는 현장에서는 이러한 개척과 투쟁의 몸부림을 가까이에서 목격한다. 폭력이 끝나길 바라지만, 가해자를 처벌할지 말지 고민하는 모습과 자주 마주한다. 고소장을 썼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법절차의 단계마다 고소를 취할지 고민하는 모습도 자주 마주한다. 종종 사정을 모르는 제3자들은 피해자의 흔들림과 처벌불원 의사를 보고 피해 사실 자체를 의심하기도 한다. ‘이렇게 큰 피해를 입었는데 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싶어하는걸까?’ 이 의문 자체가 무용한 것은 아니다. 대신 이 의문을 좀 더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가족을 떠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라는 질문으로.

### 당면한 보호와 주거의 문제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88%가 법적 미성년자일 때 첫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가 지속되었다고 증언한다.<sup>3)</sup> 그렇기에 친족성폭력 피해자의 일상의 권리는 아동·청소년의 돌봄 받을 권리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국 사회에서 아동·청소년을 돌보기 위한 권한은 혈연 가족에게 위임되어 있다. 쉼터의 지원자들은 법적 미성년자인 피해생존자의 휴대폰을 개통하거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장벽과 매번 마주한다. 실질적으로 피해생존자를 보호하고 있지만, 혈연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동시에 가해자가 혈연가족이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sup>4)</sup> 주소를 열람하는 일은 너무 쉽게 일어난다.<sup>5)</sup> 혹자는 적

3) 한국성폭력상담소 2021년 상담통계를 참조하라.

4) 법적 미성년자가 가출하여 신고되는 경우, 경찰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가출하는 미성년자의 휴대폰 등을 조회하여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이 범죄 연루를 막고 신속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조항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다수의 탈가정청소년이 가정폭력피해를 경험한다는 점에서 해당 법률은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탈가정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쉼터는 입소 72시간 이내에 부모에게 입소사실을 알리게 되어 있다. 가정폭력, 친족성폭력에 노출된 가정밖청소년의 경우에는 부모

극적인 세대 분리나 친권상실청구의 소를 제기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위한 지난한 법적해결 과정을 거치면서 또 다른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피해자에게 얼마나 큰 부담인지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 피해생존자들이 당면한 주거와 보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주거권 보장은 특히 시급한 문제다. 주거권 보장은 사라진 사회적 기반과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첫 걸음이기도 하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에게 원가족의 거주공간이란 피해가 지속되는 폭력의 장소이기 때문이다. 다른 가족구성원이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폭력을 중단시키거나, 가해자를 분리할 수 없다면 피해자에게 새로운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법적 미성년자인 피해생존자의 경우 대부분 주거계약을 할 만큼 경제력이 충분하지 않으며,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주거계약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다. 법적 성년에 도달한 피해생존자들의 주거권도 온전히 보장된다고 하기 어렵다. 주거비용이 너무 높은 한국 사회에서 가족으로부터 경제적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은 많은 경우 주거빈곤을 경험하게 된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의 주거 정책이 전무한 것은 아니다. 위기청소년쉼터나 피해자보호시설을 주거 대안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시설은 임시거처이지 온전한 주거공간이라고 할 수 없다. 피해자보호 시설을 일종의 주거사다리로서 이용할 수도 있지만, 시설 입소 기간 내에 지속 피해로 인한 후유증을 치유함과 동시에 적절한 거주지를 마련하여 퇴소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친족성폭력피해자나 그를 보호하는 가족 중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에 6개월(특별지원 보호시설의 경우 1년) 입소한 피해자는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자에 해당되지만, 이 정책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적다. 서울 지역의 경우 2020년 11월 이후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자를 모집하지 않았다.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0년 11월에 퇴소한 사람은 서울시의 국민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거지원을 받을 기회를 잃는다. 2020년에 우선공급한 주택 호수가 충분했던 것도 아니다. 당시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재외동포, 귀한국군포로, 납북피해자를 모두 합쳐 총 3호가 배정되었다. 국가와 사회가 개인의 복지를 가족에 위탁해두었다면, 가족에게 제대로 된 조력을 받을 수 없는 친족성폭력 생존자의 더욱 급진적인 주거권을 논의하고 마련할 의무가 있다.

## 가족 관계 밖에서 돌봄 받고 애정에 기반을 둔 관계를 맺을 수 있다면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도적 정비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제안되어 왔다. 10년 전 열림터 활동가들은 쉼터에 있는 기간만이 '자립 준비 기간'으로 여겨지고 퇴소와 동시에 사회적 안전망 바깥으로 급격하게 밀어내는 것은 온전한 자립을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아파트나 임대주택 거주 우선권 제공, 의료 지원의 확충, 생존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직업훈련 확대도 요구되었다(조화, 2013). 비슷한 정책이 아주 오랫동안 제안되었다는 사실은, 이 문제가 오랫동안 간과되었다는 점을 의미할 수도 있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고소 이후 사회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신설하고 정비하는 일은

- 
- 에게 입소 동의를 구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가정밖청소년 지원현장 지원자들 다수가 폭력 피해를 말하거나 입증하기 어려워 쉼터 이용을 꺼리는 청소년들이 많다고 밝힌다.
- 5) 여성성폭력피해자는 주민등록등초본 열람제한을 신청할 수 있지만, 2022년 8월 전까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입소사실확인서만으로는 열람제한 신청이 불가능했다. 피해생존자들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나 경찰관서에서 발급한 가정폭력피해사실 소명자료를 추가 제출해야 했는데, 이는 사건의 법적 해결을 망설이는 피해자들을 가해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즉시 보호하는데 걸림돌이었다.



분명히 필요하다. 그렇지만 제도를 추가하는 것만으로 정말 친족성폭력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다른 급진적인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닐까?

복지와 보호가 가족에 묶여있는 문제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멜린다 쿠퍼는 1970년대 이후 사회가 아니라 혈육에게 빈곤을 해결할 책임이 넘겨졌고, 가족의 기능은 사회와 국가 대신 복지를 수행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분석한다(루이스, 2023:15). 이 분석은 2023년의 한국에서도 유효하다. 송다영(2014) 역시 1960년대 이후 “선가족책임 후국가보호”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기본 전제라고 논의한다. 이처럼 가족이 복지를 우선적으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고발한다는 것은 안전한 복지로부터 이탈하게 된다는 의미를 지닌다. 법적 해결과정이 종료되더라도 가족이라는 복지단위 밖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피해자가 당면하는 일상의 위협이다.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부모와 사회와 국가가 당연히 져야 할 책임”(한국성폭력상담소, 2020)이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만을 위한 정책 정비와 신설도 필요하지만, 돌봄이 가족 단위에 맡겨져 있지 않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것도 꼭 필요한 일일 것이다.

애정과 친밀성이라는 감정이 가족 단위에 묶여있지 않을 필요도 있다. 열림터에서 활동하며 기억에 남는 많은 장면이 있지만, 그중 가장 마음에 남는 장면 중 하나는 생활인들이 가족의 부재에서 오는 외로움을 호소할 때이다. ‘저는 가족이 없잖아요. 저 말고 가족 없는 사람이 얼마나 더 있어요?’ 라는 질문부터 ‘제 엄마가 되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요청하는 일까지. 분명 폭력적이었던 원가족보다 훨씬 자신을 존중하고 애정을 보내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관계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정의하고 싶어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가족이 없어진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는 근원적인 공포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해자를 옹호하는 가족들 역시 자신과의 연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는 경우가 잦다. 이런 위협은 우리 사회가 가족 관계 외의 친밀성을 그다지 구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배가되기도 한다.

“맞아요. 퇴소한 후에는 이제 터치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사건 진행이 더 길어지는 게 싫어서 그냥 ‘그래, 가해자한테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끝내자’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제일 미친 짓이에요.” (<https://yeolim.tistory.com/260>)

열림터 또우리<sup>6)</sup>는 가해자에게 사과하고 사건의 법적 과정을 끝내려고 했던 자신의 과거를 “제일 미친 짓”이라고 표현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친 짓”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그가 고소 후 “터치하는 사람” 없이 혼자가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열림터에서 만났던 많은 친족성폭력 피해자들이 외로움과 고독함을 토로했다.<sup>7)</sup> 고소를 진행하고, 국선변호인을 선임 받고, 피해자보호시설에서 보호받고, 성폭력피해자의료비를 지원받더라도 온전히 해소되지 않는 것이 바로 외로움과 고독함이라는 감각이다.

가족은 애정과 친밀한 관계의 대표적인 상징이다. 이 상징은 큰 힘을 가지고 있다. 사건의 법적 해결 이후에 많은 피해생존자는 근원적인 친밀성을 상징하는 관계를 상실했다는 사실을 극복하기 위해 분투한다. “가족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내고, 사람들이 비롯되고,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사람들이 속하는

6) “또 만나요, 우리”의 줄임말로, 열림터 퇴소생활인을 이르는 말이다.

7) 2022 상반기 여성인권포럼 자료집 중, 글쓴이의 글 “기본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 일상회복의 기본 조건인 주거, 연대, 노동의 권리”를 참고하길 권한다. 친족성폭력 피해생존자들에게 ‘의지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또우리들의 말이 많이 인용되어 있다.

배타적인 장소라는 생각”(루이스, 2023: 14-15)을 해체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가족이라는 체제가 너무 공고하다는 사실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피해자가 폭력을 말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사회가 제대로 된 기반을 제공해야 한다. 가족을 고소할 수 있는 형법 조항이 존재한다고 해서 사회가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는 없다. 공소시효 폐지 이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사회적 기반은 가족제도를 벗어난 돌봄과 애정의 관계일 수 있다. 더 적극적으로 가족 밖의 관계를 만들자. 더 적극적으로 가족 밖의 관계를 승인하고, 지원할 것을 요구하자. 친족성폭력에 대항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 단위를 재조직할 것을 요구하는 일이라는 점을 다시금 상기한다.

## 참고자료

류수민(2022), “기본법이 보장하는 피해자의 ‘권리’: 일상회복의 기본 조건인 주거, 연대, 노동의 권리”, 2022 상반기 여성인권포럼.

소피 루이스(2023), 가족을 폐지하라-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세계를 상상하는 법, 서해문집.

송다영(2014), “돌봄의 사회화와 복지국가의 지연”, 한국여성학 제30권 4호, pp.119~152.

<https://www.sisters.or.kr/activity/law/5522>

조화, (2013.12.03) 쉼터 퇴소 후 홀로 서야 하는 차가운 현실 ‘친족성폭력’ 이야기 (7) 자립을 위한 몇 가지 조건 <https://www.ildaro.com/6522>

“2022 풀짜기금 인터뷰: “드디어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 흔들리면서도 단단히 걸어온 선하” <https://yeolim.tistory.com/260>

## 함께 이야기하기

**플로어A** 안녕하세요. 장서연님께 질문이 있어서 드립니다. 맨 처음에 헌법 36조 1항의 의미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성과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맨 처음에는 호주제 폐지로 인해서 변화가 되고, 민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부분은 민법에서는 가족의 돌봄이라든가 아니면 복지를 위임하고 있다는 그 뜻으로 알고 있으면 될까요?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그렇게 이해한 게 맞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장서연** 원래 이게 2005년 호주제 폐지 이후에 헌법,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의 가치가 도입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미 원래 헌법에서 당시에 워낙 남녀 차별의 전통과 사회 문화가 심각했기 때문에 헌법적인 가치로 일단 먼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했어요.

그런데 이 헌법의 제정도 불구하고 실제로 친족편을 만드는 민법을 제정할 때는 헌법적 가치보다 전통을 존중했다는 거죠. 초대 민법을 제정했던 사람들이. 그런데 그 가족제도가 40년이 넘게 호주제가 유지가 되고 있다가 헌법재판소에서 2005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이 헌법 조항을 근거로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는 전통보다 헌법이 더 우위에 있다,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양성의 평등이나 개인의 존엄을 규정하고 있는데 호주제도는 양성의 평등에도 반하고, 개인의 존엄에도 위반된다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자** 혹시 더 이야기 나누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분 계실까요?

**플로어B** 안녕하세요. 허민숙 입법 조사 연구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 폐지에 관해서 25년까지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증거 관해서 이슈가 많을 것 같아요. 공소시효가 완전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증거가 없는 케이스들이 수도룩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공소시효 폐지와 관해서 함께 고려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지, 조금 완화되는 것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증거가 차지하는 비중을 줄인다든지, 이런 조치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민숙** 저야말로 이걸 살펴보면서 이렇게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된다면 피해자 진술밖에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고민을 저도 읽으면서 들더라고요. 사실은 제가 피해자 지원하실 때 진술밖에 없는 경우에 승소율이라고 할까요? 법원에서 인정받는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사실은 질문하고 싶었어요. 그것이 큰 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지금 일단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과학적 수사 기법이 대단히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거에 의존해서 공소시효 폐지에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공부를 못 했는데, 일단 그렇다면... 선생님은 그럼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피해자의 진술뿐인 사건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세요.

**플로어C** 최근에 미투 운동 때 보면, 예술고등학교 시인 교사였는데 사건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게 8년 전 사건이었는데 유죄가 강력하게 나왔어요. 그때는 어쨌든 피해자도 여러 명이 있었고, 그리고 그즈음에 어린 시절 태권도 코치 사건 같은 경우에는 형사는 아니고 민사로 인정이 됐는데 그때도 피해자의 상세한 진술이라든지 보완하는 정황 같은 걸 함께 봤을 것 같고, 지금은 법 시장화에 피해자가 또 어렵게 통과하는 과정이라고 보이고, 증거에서 피해자의 심리적인 상태가 피해로 인한 것이라는 것도 작용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오래 전, 어린 시절, 피해자가 성인이 된 한참 이후 민사였지만 인정된 사례도 있고, 이윤택 사건 같은 경우도 피해자 다수가 고소하셨는데 그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피해자였는데도 경찰이 진술을 받았거든요.

공소시효가 도과된 피해자 건은 공소권이 없었겠지만 어쨌든 상습적이었던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것으로 경찰이 진술을 더 받고, 그렇게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피해자들 중에서는 예전 사건을 공소시효 도과되기 전에 제기해 보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도 있고, 피해자 진술 외에는 다른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되거나 하는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가족의 경우에는 인정하는 가해자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걸 알았던 가족들이 은연중이나 아니면 고백하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허민숙**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급하게 이걸 준비하면서 여러 편의 미국에서 출간한 학술 논문을 읽었는데 비슷한 맥락이었던 것 같아요.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수영 코치였다든가 이런 경우가 사례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의 굉장히 독특한 제도가 있는데 반증추정허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반증추정허용이 뭐냐면 누가 어떤 주장을 하잖아요. 내가 주장을 해요. 피해자로서 원고가 이런 잘못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 공격을 받은 원고가 반대의 증거를 끌어내지 못하는 이상 이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적용되냐면, 미국에서 이혼소송할 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양육권, 친권을 잘 부여하지 않거든요? 우리 ○○시에서 초등학생, 의붓엄마랑 친아빠랑 살다가 결국 사망한 그 사건에서도 아버지가 가정폭력 가해자였는데 친권, 양육권 다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가정폭력 피해자였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를 주는 조건으로 이혼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혼 안 해준다는 거예요, 양육권과 친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왜냐하면 폭력 피해를 더 이상 당할 수는 없고, 이혼을 안 해준다니까 그 조건으로 이혼을 했는데 다 넘어갔다는 거예요.

캐나다에서 4살, 6살 딸 둘이 가정폭력 가해자였던 아빠의 집에서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둘 다 살해당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가정폭력 가해자에게 친권, 양육권 주지 않는다는 법이 만들어졌는데 미국의 반증추정허용이 여기서 적용된다고 잠깐 나왔었어요. 친족 성폭력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뭔가를 진술했을 때 가해자가 그걸 뒤집을 만한 증거를 오히려 대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요건이 들어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한국에서 입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수준에서는 상당히 회의적이에요.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국회에서 국회 환경,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사회자** 저희가 1차 간담회 하기 전에 상담소에서 친족 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활동가 분들 이랑 간담회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나눴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나는데 실제로 공소시효를 폐지하면 정말 어떤 증거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가거나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겠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폐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친족 성폭력 생존자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 하나가 더 생기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은 공소시효가 있기에 제한된 선택지가 있지만 폐지를 함으로써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하나가 생기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더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분 있을까요?

**장서연** 제가 사실 주제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까 미국의 사례는 친족 성폭력이 아니라 강간이나 성폭력 전반에 대한 공소시효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친족 성폭력에 초점을 맞춰서 공소시효 폐지를 주장하는 근거. 아무래도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궁금했어요. 그게 앞으로 주장하는 데 어떤 전략과 방향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고.

**허민숙** 제가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옆에 미성년자, 인새스트(편집자 주: incest, '근친상간'으로 해석됨.)라고 해서 주 정부별로 얼마나 규정이 있는가 봤는데 거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성년자는 다 NO SOL(편집자 주: 공소시효 없음)이에요. 공소시효를 전면 다 폐지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주 정부마다 성폭력에 대한 유형이 굉장히 많아요. 한 주 정부에서 이런 성폭력, 저런 성폭력을 막 유형을 해놓고 옆에 NO SOL인지 아닌지 보는데 인새스트는 주로 10년, 4년, 5년, 10년... 31세 이전이라고 해서 여기 이 논의가 커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강간 전체를 공소시효 폐지를 하자, 강간 범죄에 대해서 다 NO SOL을 만들자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 저도 이 인새스트 용어 자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근친상간인 거잖아요. 그 용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저도 그 문화를 잘 모르겠어요. 친족 성폭력으로 받아들이는지 아니면 그들의 문화 내에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뉴욕주가 1급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완전히 폐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족 성폭력이 포커싱돼서 이 NO SOL 운동이 규정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조만간 이게 투표를 하면 강간 전체에 NO SOL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제는 NO SOL이 되잖아요? 무고죄가 판을 칠 건데, 이 무고죄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형사소송법상 규칙을 만들어놔야 해요.

첫 번째는 철저한 수사 이후에 이 성범죄가 일어나지도 않았고, 시도되지도 않았다는 물리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만 이 무고죄 기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허위였다는 물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만 사실은 무고죄 기소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법적 근거가 없이 그냥 감사의 느낌적인 느낌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소시효가 폐지되면 아마 무고죄로 피해자를 기소하려고 하는 그런 백래쉬라고 할까요? 그것도 아마 클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플로어C** 질문해도 되나요? 친족 성폭력은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 전체 상담의 15% 정도는 계속 있었고, 그리고 열림터가 생기게 되고 열림터에서 가장 많았던 생활인도 친족 성폭력 피해자인데 친족 성폭력 문제를 <작은말하기>라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피해 생존자 자조 모임에서나 미투 때 푸른나비님 발언에서도 친족 성폭력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친족 성폭력 생존자들이 많이 나섰고 책도 내고 시위도 하고 했는데 이걸 대응하는 사회의 반응이, 언론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너무 근원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런 천륜을 거스를 일이 있나.” 이런 악마화를 하고,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적인 인간이 있다.” 같은 것처럼 얘기하면서 기존의 정상가족은 보호와 양육 같은 것에 충실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 하는 성폭력 가해를 하는 가족이 있다니. 부친이 있다니.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놀라는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서, 계속 그런 식의 워딩으로 이 상황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이 가족 내 구조나 이런 것들이 성폭력을 심화시켰거나 가족 안에 소속되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이 구조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싶었기 때문에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던지는 방식으로 이걸 의제를 만들자, 그러지 않으면 계속 이걸 다시 재현할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로만 된다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2018년, 2019년 즈음에는.

이걸 다시 공소시효 폐지를 걸고 수년 동안 많은 활동들이 있다 보니까 애초에 처음에 제기하고 싶었던 그 문제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나 하는 고민이 들어서 이게 법안으로도 얘기가 나오기도 했고, 22대 국회가 오면 제안을 해야 할 텐데 가족이라고 하는 문제, 아동학대도 마찬가지로 가족의 여러 가정 폭력도 마찬가지인데, 이 가족이라고 하는 메커니즘이 피해자로 하여금 다른 시민이랑 비슷하게 법이나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유의미하게 더 논의하도록 건질 것인가에서 저희는 어떤 얘기를 더 하면 좋을 것 같고, 어떻게 국회에서나 이 얘기를 받아서 의도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할지에 대해서 허민숙 선생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기도 하고, 장서연 변호사님께도. 친족 성폭력 얘기를 하면 기존의 가족 틀을 깨는 활동을 하는 사회 운동이 되게 많거든요?

혼인 평등 운동도 있고, 아니면 성소수자 부모 모임도 있고, 아동 학대 문제도 있고, 가정 폭력도 있는데 친족 성폭력 이야기를 하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고, 나는 잘 모르는 분야고, 뭐라고 이야기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반응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서로 연결해 보자, 같이 해보자는 반응보다 잘 모르겠다는 반응이 더 많거든요? 이 문제랑 기존의 가족 틀에 대해서 뭔가를 새롭게 제기하는 다른 운동들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장서연 변호사님께 얘기를 묻고 싶습니다.

**허민숙** 제가 조금 하나의 오해를 풀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전공은 여성학을 전공했고, 여성에 대한 폭력을 세부 전공으로 했는데 국회에 들어가서 맡은 업무 분장은 가족 청소년이예요. 그래서 제가 성폭력 분야에 있어서 겉에서 볼 때는 왜 저렇게 일을 안 하지 싶을 텐데 말

은 업무가 아니어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인데 국회에서 그 분야에서 1명이  
말다 보니까 한 분야에 한 명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일을 안 하면 다른 사람  
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이니까 친족 성폭력은 제가 조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그쪽 분야  
에 하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변화를 말씀드릴게요. 의원실에서 사실은  
시민동반자관계, 등록동반자 이런 거에 대한 질의를 올해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하는  
업무 중 하나가 의원실에서 질의를 하면 답변서를 작성해서 보내드리는 거거든요? 오늘 도  
대체 한국에서 법률혼 관계에서 나오는 아이가 누리는 아동의 권리와 법률혼이 아닌 관계  
에서 사실혼이나 파트너인 관계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누리는 권리에서 무슨 차이가 있느냐,  
외국은 어떠한 질의가 왔어요.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 제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고,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육아휴직 같은 경우에 부부가 동시에 쓰면 특례제도라고 해서 돈을 많이 준다거나 이런 게  
있거든요? 배우자 출산도 사실혼 같은 명확한 규정 자체가 없어요. 주거에 있어서 신혼부  
부, 전세임대 이런 부분에서 법률혼만 대상인데 직접적인 아동 권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식의 간접적인 차별을 받는다고 썼는데 외국에서 어떻게 하냐고 거기에 던지는 거예요.

외국에서는 사실혼에 대한 보호는 우리나라랑 비슷하게 미흡하지만 시민동반자 제도가 있  
다. 여기에 등록하면 아동들은 완벽하게 권리를 보장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게 되  
면 아동의 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어서 이런 제도에서 법률혼과 똑같다고 느껴지는 게 마찬  
가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아주 낙관하지는 않지만 비관도 아니에  
요. 등록동반자 같은 게 국회에 들어오는 데 10년, 20년 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  
고, 국회가 특징이 뭐냐면 지금 출생통보제 바로 통과됐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2,123명 아이들을 병원에서 낳았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고, 10시에 발표  
해서 전수 조사를 했더니 1000명 이상이 살아 있고, 290명은 사망했고, 800 몇 명은 조  
사 중이다. 2020년에 법이 발의됐는데 지금 며칠 만에 통과가 되고. 그런데 큰 사건을 겪  
어야지만 국회는 움직이는가. 친족 성폭력 관련해서 무슨 큰 사건을 겪어야지만 국회가 공  
소시효 같은 걸 폐지하자고 할 것인가. 그런데 급물살을 타면 정말 빨리 처리해요. 본회의  
에 며칠 만에 넘어가고 모르는 사이에 통과가 돼 있고, 이 정도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필요한 건 어쨌든 짜임새 있는 법안을 어떤 의원실에서 발의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야  
하고요. 준비가 돼 있어야 하고, 필요한 게 데이터를 가져다 오는 거거든요.

성폭력상담소에서 아까 말했던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고, 준비하고, 이것을 폭로하기까지  
50년이 걸린다는 외국 데이터들이 지금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소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족이라는 건 가부장적인 가족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빠르게 해체될 것 같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지금 계속 다  
양한 가족, 이런 것들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다 저출산 때문에 되게 많이  
그래요. 사실은 이런 기회들을 활용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한번 같이 고민을 하고, 그렇게 해볼게요.

**장서연** 네, 가족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로 인해서 친족 성폭력의 특수성이나 아니면 친족 성폭력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여지는 사회 인식의 문제 제기 차원에서 공소시효 폐지 주장을 하게 됐다고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도 세 번째 발제를 듣다 보면 물론 아동 시기의 성폭력 피해, 친족 성폭력이든 아니든 거기에 대해서 신고하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특히 가족 내에서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는 더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는 범죄 피해의 특성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을 벗어났을 때 보호되는,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걸 더 지연시키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법적 가족이 아니어서 겪게 되는 차별,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운동들도 많아지고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안으로 법률혼이나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가족이 아닌 관계들에 대한 새로운 특별법 제정이라든가 아니면 특히 주거나 사회복지 정책에서 가구 단위, 가족 단위가 아니고 개인 단위로 해야 한다, 그런 운동들도 있고 또 특히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 대리인 친권자가 법률 행위를 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주거가 많이 문제가 되기도 하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아동 청소년 권리와 관련한 그쪽 운동과도 접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허민숙** 제가 수사 선생님한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20쪽 밑에 혈연 관계라는 이유로 피해자의 위치를 추적하거나 주소를 열람하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셨는데 이걸 제가 가서 어떻게든 막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선생님이 실무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있고, 그래서 좀 구체적인 피해라고 할까요?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시는지 들어보고 싶어서 여쭙습니다.

**수 수** 이 부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있을 때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경찰이 가출 청소년인데 위치 추적하고 있다고 해도 저희가 성폭력 피해자이고, 쉼터가 이런 쉼터라고 설명하면 되는 문제라서 저희 쪽은 관찮은 것 같지만, 많은 일이나 단기 청소년 쉼터 실무자들이 이 문제를 되게 많이 겪고 있는 것 같고, 애초에 입소부터 잘 안 하는 경우가 많다고 다들, 청소년들이 정원은 남아 있는데 입소하지 않는다고 하고 입소하지 않는 이유는 부모님한테 연락이 갈까 봐 입소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게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쉼터에서는 72시간 때문에 꼭 부모한테 연락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되게 곤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열림터 현장에서는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다른 청소년 운동 현장에서도 가출한 청소년 활동가들이 신고당해서 다시 경찰에 잡혀가는 경우를 되게 많이 봤던 거고, 경찰은 보호를 위해서 나타나지만 잡혀가는 느낌이 실제로 드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호하고 있는 성인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당신들은 이 가출 청소년들을 보호자가 아닌데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유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협박하면서 데려가는 경우도 종종 많이 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고요.



다행히 주민등록 등, 초본 열람 제한은 작년 8월 직전에 신청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 입소 사실 확인서 한 장으로 열람 제한 신청이 가능하지만 그때는 입소 사실 확인서로 증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에 입소해 있는데 왜 열람 제한이 안 되는지 너무 이해가 안 갔고, 안 되기 때문에 의료 기관에서 진단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경찰서 가서 신고했다는 사실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데 가는 것도 번거롭고 번거로운 것만 문제면 모르겠는데 신고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지금 가서 고소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고,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경우에는 열람 제한을 할 수 없고, 컴퓨터로 주소 등록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되게 난감했던 것 같은데 다행히 개선이 되어서 이 부분은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허민숙** 주소 열람 제한으로 보호를 받는데 피해자 위치 추적은 여전히 문제인 거네요?

**수 수** 저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소를 하지 않는 피해자들 경우에는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열람터 현장에서는 사실은 많이 겪은 적은 없어요. 그런데 열람터로 오는 경우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된 경우라고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찰이든 저희 상담소든 기타 보호자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이 청소년이 보호 시설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신고할 때 어떻게 적절히 지원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면 그런 경우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담 자료가 있으면 찾아보거나 데이터를 확인해 보거나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지금 9시 20분이 좀 넘었는데요. 혹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플로어D** 저는 입법 조사 연구관 허민숙 연구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한국의 친족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공감을 하면서 저도 미국이나 캐나다 관련해서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모르겠어요. 한국하고 문화가 조금 달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족이라는 테두리에 대한 것보다 개인이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친족 성폭력을 그렇게 크게 인세스트라는 단어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아동 성폭력에 대해서 오히려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미국에 있는 성착취물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친족 내에서 일어나는 성착취물이 굉장히 많이 확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제가 알기로는 미국 쪽에서 공부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미국에서 그런 친족 성폭력 관련한 성착취물 같은 경우에 형량이나 어떤 처벌받는 것에 대한 윤리, 사회적인 분위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친족 성폭력 자체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하지만 그것과 관련한 성착취물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가 되지 않는 부분인 것 같아서요.

**허민숙**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당시가 너무 오래전 일이라... 제가 2001년에서 2008년 사이에, 너무 오래전에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성착취물에 대해서 크게 이슈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됐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미국에 있었을 때 뉴욕 로체스터 공대에 다니던 한국인 남자 유학생이 한국에서 하던 똑같은 짓을 한 거죠. 불법 아동 성착취물을 다

운받았습니다. 그걸 봤는지 안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FBI한테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억 얼마가 넘는 벌금형에다가 징역형에다가, 그런 걸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사회에서 아동이나 이런 걸 다운받아보고 이런 건 완전 아무 일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게 한국에 별로 안 알려졌어요, 그 기사. 찾아보시면 아마 없을걸요? 아마도 제가 확신하기는 어렵지만 말씀하신 대로 아동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면에서 만약에 친족에 의한 성착취물이 촬영되고, 배포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받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걸 확인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는 점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플로어E** 저는 아까 나온 논의 중에 피해자 진술밖에 없는 성폭력 피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친족 성폭력이 '어떻게 가족이 그러나, 가족은 그럴 수 없다'라는 규범에 의지해서 법적인 처벌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사실 성폭력 전체의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진술뿐인 경우에 물론 피해자가 다수이면 너무나 좋겠지만, 증거에 힘이 훨씬 더 실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계속 규범에 맞게 주장을 하거든요, 현장에서. 가해자랑 피해자랑 연령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나요? 교수랑 학생인데 어느 학생이 그걸 과연 원할까요? 누가 가족하고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겠어요? 혹은 피해자가 성적 경험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원했을 리 없어요.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규범에 의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는 그건 너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결국은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인 감수성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저희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이다, 성폭력 소송 현장 전반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질문드리고 싶은 건 수수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저는 친족 성폭력의 피해라는 것이 성폭력 행위로 인한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아동 청소년기 돌봄받을 권리를 매일매일 박탈되어온 경험. 굉장히 그 시기에 제공받았어야 하는 작은 돌봄이나 존중들, 이런 것들이 제공되지 않았던 것이 오랜 시간 누적되어온 피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친족 성폭력 피해자의 생활을 계속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저는 한국의 쉼터 제도가 너무 생활인들에 대해서 아주 최소한의 자원만 제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예전에 들은 조금 단적인 사례로는 너무 오래전이라서 예로 들기 미안하지만 공무원이 김치 같은 거 쉼터에 보내주면서 '김치 있으면 되지 않나'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어떤 정서인지 저희가 너무 다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최소한으로 보호를 제공하려고 한다고 생각해서 활동가인 수수님께 여쭙보고 싶은 것은 이 틈을 벌릴 수 있는 생활인들의 의견이나 활동가님들이 평소 나눴던 얘기 중에 이런 것들이 제공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것이 그다지 현실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이를테면 '나를 입양하세요' 이런 분이 계셨다면 이분에게 새로운 엄마가 있으면 너무 좋은 거잖아요. 현실적이지 않기는 하지만. 뭔가 지원 제도의 확장을 고민하신 내용이 있다면 여쭙보고 싶어요.

**수 수** 어렵네요. '나를 입양해 주세요'라고 하면 너무 할 말이 없어지는데... 왜 그 말을 하는지 그것이 그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너무 아는 거죠. 쉼터 생활인들과는 이런 얘기는 많이

못 해봤던 것 같기는 해요. 당장 잠자고 밥 먹고 학교 가거나 출근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 이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쉼터 밖에서 어떤 형태일까 하는 상상은 많이 못 해본 것 같기는 한데 저는 가족이 아닌 친밀함의 공동체나 돌봄의 공동체들이 주변에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접하고 존재한다는 걸 알면 가족 밖에 있는 나에 대한 상실감 이라든가 아니면 지독한 고독함 같은 것들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사실 퇴소한 사람들과 이 얘기를 많이 하기는 했었어요. 쉼터를 퇴소하고 자립의 과정에서 본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던 것 같냐는 질문을 최근에 저희가 많이 던지고 있고, 다른 글에서도 썼었는데 한 분이 되게 명쾌하게... 제가 썼을까요? 아무튼 집이랑 먹고 살 만한 직장이랑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 관계를 어떻게 고민할지가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주거는 주거권, 직장은 취업 훈련이든 이런 제도로써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계라는 것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되게 많은 공동체들과 가족 바깥의 많은 관계들과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사회 분위기로써만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상상하려면 어떠한 모델들을 만들고, 어떤 관계를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굉장히 많이 들기는 합니다.

#### 허민숙

마지막 질문하신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정확한 지적을 해 주셨고, 아까 소장님께서 저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당연한 정상 규범에 딱 들어맞는 가정에서 어떻게 친족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냐는 프레임에 갇힌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딱 그 프레임이어야지만 주목하고 언론이 주목할 것이라는 거죠. 언제나 문제였어요.

미국에서도 DB가 사회 문제화가 되었을 때 운동가들이 아프지만 누가 타깃이었냐면 화이트 차일드였어요. 백인의 순수한 아주 전혀 이 범죄에 대해서 기여한 바가 없는 순수한 희생자 모델이 있었을 때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딜레마를 훨씬 알거든요.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소장님의 고민과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준 격차가, 입법부의 격차는 아까 말했던 미디어가 주목하는 수준이 딱 거기라는 거죠. 어떻게 돌봐야 할 책임자들이, 사랑을 듬뿍 줘야 할 사람들이 문제자가 되는 거. 거기에 있으면 관심이 확 갈 수 있거든요.

어려운 숙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것이 운동 전략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를 공략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다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이 전략을 버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코멘트를 해 주신 것 같아요.

#### 사회자

저희가 지금 9시 반이 지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간담회를 기획한 것도 공소시효 폐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면 어떤 문제 의식을 넓게 보지 못하고 좁아지는, 언어가 좁아지는 걸 느끼기도 했고, 뭔가 미디어에서 친족 성폭력이 굉장히 어떤 악마와 같은 가해자가 한 것으로만 재현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인식이 있고, 짚고

넘어가고 싶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간담회를 기획한 것인데요.

오늘 생각보다 토론 시간이 40분이었는데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2차 간담회가 8월 3일 목요일 저녁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법 제도와 관련한 발표와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때는 여성폭력의 구조로써 기능하는 이성애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를 같이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나눴던 우리가 어떻게 정상가족을 넘어서 친밀한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관계를 구성할 수 있을까, 서로를 돌볼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더 확장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사실 짧아서 너무 아쉬웠던 선생님들은 꼭 8월 3일에 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사전 질문들도 들어왔는데 제가 시간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소감과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 질문 중에 공소시효 폐지가 된다 해도 과학적인 증거나 CCTV나 이런 증거가 없어서 사건 진행이 어렵고, 형사 고소가 어려운 친족 성폭력 생존자 사람들을 위한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이런 질문이었는데 오늘 간담회 소감과 곁들여서 같이 돌아가면서 대답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수 님부터 먼저 할까요?

**수 수** 소감 전에 하나 정정하면, 아까 쉬는 시간에 장서연 변호사님이 저한테 SH 보셨냐고 하셔서 여기에 있는 임대주택 3호는 LH 기준이라는 거, SH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더라도 형사 고소가 어려운 경우... 이걸 너무 어렵다. 사건을 법적으로 해결한다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사건을 해결한다는 것이 어떤 이유인지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법적 해결 이외의 다른 해결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탐색하고 주변인들도 함께 그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친족 성폭력에 대해서 더 많이 논의하고 가족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이 질문하는 것들도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친족 성폭력이 그냥 어떤 성폭력 유형1이 아니라 더 많은 제도라든가 사회의 구조와 연결돼 있는 것이니만큼 더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토론회 참여하면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장서연** 사실 공소시효가 말씀하신 것처럼 증거의 멸실 때문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기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소송법적인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반 범죄에서 공소시효가 다 있는 건데 친족 성폭력의 경우에 상담소에서 통계를 낸 것처럼 신고하는 데만 해도 10년 걸렸다고 하셨죠? 그리고 절반 넘게 공소시효가 도과된 그런 특성을 고려하면 당연히 공소시효에서 예외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약간 범죄 수사에 있어서 법 규정도 중요한데 결국에는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일 것 같아요. 이런 친족 성폭력의 특징이나 아동기에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진술의 신빙성이나 등등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수사하고 그런 것도 같이 변해야 사실상 형사 처벌까지 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피해자가 수사 기관에서 2차 피해나 더 좌절을 겪지 않게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드는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은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민숙** 이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진술을 가지고 입증하는 것이 가능하냐, 또는

진술을 믿어도 되느냐, 그렇게 오래됐는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가해자를 도와주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이 아닌 다음에야 지금 35년이 지나서 그 진술을 너무도 자세하고, 너무나 또렷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그 이유가 뭘까?

진술이 증거 기능이 충분하다는 것을 저희는 이미 전제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 저희가 운동을 하면서 너무 오래된 진술, 너무 희석된 기억, 이런 것들로 출발을 하게 되면 이것은 가해자의 언어인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변호사들은 별 얘기를 다 하겠죠. 유산 상속의 문제로 친부를 성폭력 가해자로 만들어서..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검사의 수사 기법 중 하나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일관되게, 자세하게 그리고 지금 이 진술을 함으로써 자신에게 얻는 이익이 없는 상황인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있고, 사법부가 미투 운동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인식 수준을 갖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미리 겁내 하거나, 진술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증거가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더 많이 신뢰하고, 더 많이 지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러면서 외국의 법 제도도 들여다 보고. 애네들이 비밀리에 범인이 이 사건을 숨기면서 범행을 자행한 경우에 더 엄중하게 처벌을 하는 이런 조항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선생님들 운동하시는 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소감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집에 안 가시고 이렇게 계셔서 깜짝 놀랐고, 참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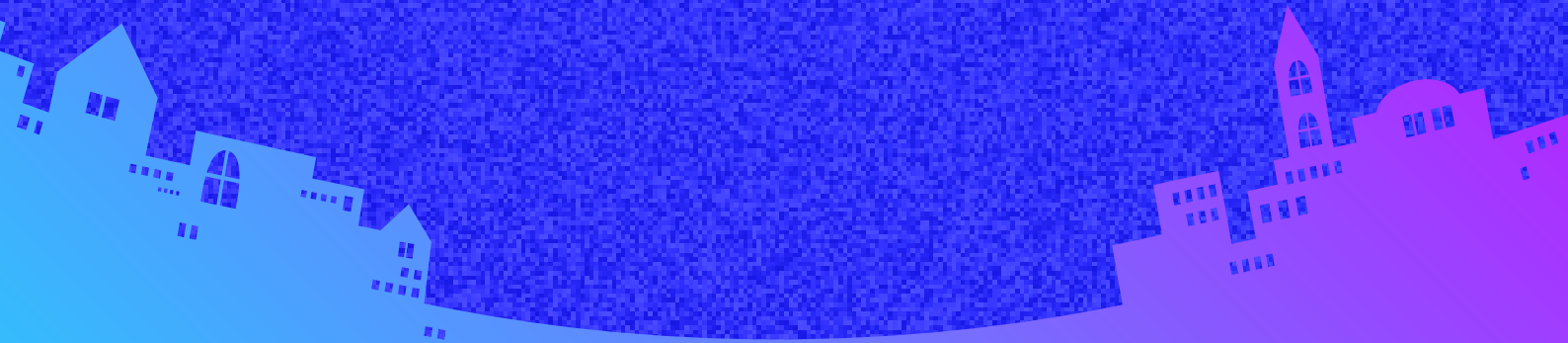
방금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신뢰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저희가 스웨덴에 가서 사법 제도를 연구하신 판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스웨덴에서도 아동 성학대나 성폭력으로 신고된 아동 피해자의 진술을 굉장히 신뢰하고 오히려 그 피해자가 아무 일도 없었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믿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서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게 정말인지, 맞는지 의심하는 현실과 대비해서 고민이 깊어졌었습니다. 오늘 긴 시간 수고 많으셨고 집에 조심히 안전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족성폭력공소시효 폐지 운동 전략찾기 간담회<sup>②</sup>

# 가족'해방'

## 프로젝트

'이상한 정상가족'을 넘어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 친족성폭력은 왜 드러내기 어려울까?

심이경 친족성폭력 생존자, <나는 안전합니다>저자, 공폐단단 활동가

### 가족에 의한 2차 피해와 유기 공포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여러 가지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선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면 가족이 해체되거나 자신만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유기 공포를 크게 느낍니다. 가족으로부터 추방당하는 것은 자녀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죽음의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난과 낙인에 대한 두려움도 상당합니다. 피해자를 얼어붙게 만드는 이런 두려움은 피해의식이나 피해망상이 아닙니다. 제가 만난 친족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가족에 의한 2차 피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으로부터 피해자가 지지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가족들은 ‘놀이였다’ ‘애정표현이었다’ ‘실수였다’는 말로 피해를 부인하고 사소화하고 가해자를 변호하고 ‘네가 말하면 가족이 다 불행해진다’ ‘죽어버리겠다’며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피해자는 오래 고민하고 가족에게 말하지만 피해는 다시 가족의 비밀이 됩니다. 피해자가 용기 내서 외부로 폭로하거나 법적 해결을 시작하면, 가족 해체의 위기는 가해자가 원인을 제공했음에도, 피해자가 ‘가족의 치부를 드러내고 가족의 명예를 깎아내렸다’고 ‘가족의 배신자’ ‘꽃뱀’ ‘미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괘씸죄’로 ‘손절’당하는 일을 겪기도 합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가 가족 외 타인에게 자신의 피해를 드러낼 때도 ‘결격 있는 사람’ ‘감당하기 힘든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합니다.

### 가족에 대한 양가감정과 남은 기대

피해자는 가해자와 가해자를 감싸는 가족에게 다양한 양가감정을 느낍니다. 가해자와 가해자를 감싸는 가족에게 원망과 분노를 느끼는 동시에 피해 이전에 가족과 나눴던 친밀감과 신뢰 관계, 모성 신화로 인해 연민, 죄책감, 책임감, 가족 걱정, 가족들이 언젠가는 변할 거라는 기대, 여전히 가족으로부터 사랑과 돌봄을 받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은 기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가족을 위해 스스로 희생을 감내하기도 합니다. 가족에 대한 기대가 포기되기 전까지 가해자 고소를 결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피해자의 취약한 위치

가부장적 가족 구조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나이 어린 자녀(피해자)는 부모(주 양육자)의 보호와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취약한 위치에 있습니다. 피해자는 생존하려면 가족 안에 머물러야 하고 친족성폭력에 대처하려면 가족을 떠나야 하는 모순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많은 피해자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자신의 피해를 비밀로 간직합니다.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취업을 한 이후에도 여전히 가족은 필요합니다. 가족과 의절한 사람을 ‘비정상’으로 보는 사

회의 시선과 차별 그리고 피해자 자신의 시선으로부터, 즉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기 힘들다. 저는 결혼할 때 비록 껍데기일 뿐이지만 정상가족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상견례와 결혼식장에 가족이 단 한 명도 오지 않는 장면을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또 저의 미투는 뒤로 유예되었습니다. 저는 더 나이가 들면서 피해를 드러내는 것이 유산 상속에서 불이익으로 작용 할까봐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다른 성폭력과 달리,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전 생애에 걸쳐 자녀의 권리와 피해자의 권리 중 늘 한쪽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을 끊임없이 경험합니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아무 대가 없이 마땅히 주어야 할 보살핌과 애정을 인질로 삼아, 노골적이거나 은밀하게 피해자에게 희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하여 가해자를 고소하는 실익이 감수하는 위험(손실)에 비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경우가 많고 법적 해결이 피해자의 우선순위 욕구가 아닌 경우도 많기 때문에 드러내기는 여러 차례 훗날로 미뤄집니다.

### **성폭력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미리 알 수 없음**

친족성폭력은 대부분 피해자가 어릴 때, 즉 미성년자 시기에 반복해서 피해가 발생합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어리고 가해자가 아با, 오빠, 남동생, 삼촌, 사촌, 할아버지 등 가족이기 때문에 피해 시점과 피해를 인지하는 시점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족성폭력에서는 피해자에게 해리 현상도 흔히 발생하기 때문에 수십 년이 지나서 피해를 처음 인지하는 피해자도 있습니다. 또 절도나 상해 범죄는 즉각 손해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데 반해, 성폭력으로 인한 손해는 수십 년에 걸쳐서 피해자도 예상하기 힘든 방식으로 발생합니다. 저는 성폭력으로 인한 장래의 손해를 미리 알 수 없었고 여성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언어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가 일어난 지 30년 정도가 지난 지금에서야, 제가 어떤 손해를 입었는지 또 마음 깊은 곳에 얼마나 큰 분노를 억누르고 살았는지 인식하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심의 형법 체계는 이런 성폭력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자립의 어려움**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극심하고 장기적인 정신적 외상 후유증을 경험합니다. 피해 장소가 대부분 집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집에서 편히 잠들 수 없고 편히 먹을 수 없고 편히 쉬지 못하는 24시간 긴장 상태가 지속됩니다. 플래시백, 고립감, 불안, 혼란, 자기혐오, 자살 충동 등 심리적인 고통과 여러 신체화 증상은 피해자를 소진시키고 압도하기 때문에 피해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어렵게 만들고 학업 및 직업훈련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다른 성폭력 상황에 비교해 친족성폭력에서는 가족들이 피해자와 가해자를 화해시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속하고 확실한 분리가 잘 이뤄지지 않습니다. 생활 공간이 분리된 이후에도 피해자는 가해자를 가족의 관혼상제를 비롯해 다양한 가족 모임에서 계속 대면하게 되고 정신적 외상이 계속 추가됩니다. 친족성폭력은 극단적인 신뢰의 배신을 경험하는 트라우마라서 피해자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친밀한 관계 맺기의 반복적인 실패’ ‘반복적인 피해를 입는 경향’(주디스 허먼)으로 이어집니다. 친족성폭력은 삶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는 가해자에 맞설 물질적·심리적·사회적 자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남녀 임금격차, 여성에게 맡겨지는 무급의 돌봄 노동 등의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과 성역할 규범, 경쟁이 치열하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 사회의 환경도 피해자의 자립을 늦추고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어렵게 만듭니다.

### **첫 단계에서의 실패\_ 들어주는 사람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여러 차례 드러내기를 시도합니다. 처음부터 가해자를 고소하지는 못하더라도 학교 선생님, 친구, 친척, 선배, 연인, 상담사, 목사, 변호사 등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바로 첫 단계에서 실패를 경험하는 일이 많습니다.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남의 집안일'에 '참견'하기를 꺼려하고 부모에게 연락해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너만 더 힘들어진다'며 고소를 말리기도 합니다. 제가 만난 친족성폭력 피해자 대부분이 상담사에 의한 2차 피해 경험이 있습니다.

## 복합적인 여성 억압 구조

이처럼 친족성폭력은 아동학대, 가정 폭력, 성폭력의 특징을 종합적으로 가지며, 친족성폭력을 드러내기 어렵게 만드는 데는 가부장적인 가족 구조, 남성 중심의 형법 체계, 공/사 분리 이데올로기, 언어의 부재,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성차별적인 노동 시장, 사회안전망 부족 등 사회 구조적인 억압이 겹겹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친족성폭력을 대응하려면 복합적인 여성 억압 구조에 위치한 취약성을 극복하고 생존(자립) 기반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는 주어진 환경의 희생자, 취약한 피해자로 영원히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맞서 싸우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뿐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잔인한 현실에 내던져지고, 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견디고, 자신의 삶을 재건하고, 마침내 위험을 무릅쓰고 가해자와 맞설 각오를 한 친족성폭력 생존자들은 언제라도 가해자를 법정에 세우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누릴 자격이 충분합니다.

## 참고 자료

- 〈나는 안전합니다〉 심이경, 이매진, 2022
- 〈죽고 싶지만 살고 싶어서〉, 장화 · 불가살이 · 김민지 · 정인 · 희망 · 최예원 · 엘브로페 · 명아 · 푸른나비 · 평화 · 조제, 글항아리, 2021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_친족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류수민, 부천여성안전회, 2023
- 〈근친 성폭력, 감춰진 진실〉 주디스 허먼, 삼인, 2010
- 〈아주 친밀한 폭력〉 정희진, 교양인, 2016
- 〈이상한 정상 가족〉 김희경, 동아시아, 2017
- 〈괜찮아,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하인츠-페터 뢰어, 나무의마음, 2021

## 공페단단 소개



공폐단단이란 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2021년 2월 푸른나비님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외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그해 4월부터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12시 광화문에서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위한 시위(줄여서 매마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폐단단은 피해자(생존자) 뿐 아니라 연대자들도 자유롭게 참여하는 모임이고 집회, 축제, 소수자 연대, 공개발언, 국민청원, 언론 인터뷰, 공부모임 등 반성폭력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생존자와 연결되기 위한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폭력의 구조, 이성애 정상가족 '제도'

송란희\_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

금주에 들어 때리는 남편을 고소한 사건이 두 번이나 생겼다. 부부간의 문제는 집안일이라 해서 좀처럼 공개하거나 노출시키지 않아 왔었는데 사회문제로 부각됐다는 관점에서 세인의 관심을 끈다. 주부들의 고통을 나누어지자는 뜻에서 '여성의전화'가 구급전화처럼 개통하여 호소내용이 널리 공개된 뒤, 공교롭게도 그전에 없었던 아내의 남편고소가 잇달아 나타나고 있다. 사랑과 이해와 화합이 깨지면 부부도 결국엔 남남이라는 산술공식을 보는 것 같아서 우리가 오래동안 알뜰이 지녀왔었던 부부상에 금이 가는 듯한 서글픔을 느낀다. 참고 견디면서 승화키시던 애정, 이것을 서로 나누면서 정을 보던 전통적 부부애마저 증발되어가는 시대가 온 듯해서 안타깝다.

1983.7.17. 조선일보 사설



”

부부간의 문제를 노출시키는 의도는 주변사회에 공개해서 사회문제로 관심을 불러일으켜 원인제거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 게다. 그러나 사회법에 부부문제를 노출시킬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몇 가지 역효과도 참작해야 한다. 가정의 명예손상이 첫째요, 자녀에게 끼치는 타격이 둘째요, 가정 안에서의 부모권위 실추의 문제가 셋째요, 원만한 화합해결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 넷째 문제다.

(중략)

그럼에도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과 학대를 받는다는 표현으로 포괄해서 사회문제로 계속 확대된다면 이는 납득이 어려운 합리성이 결여된 호소가 될 것이다. 여기에는 좀더 냉철한 선별 시각이 필요한 것이라 여겨져 미리 지적해둔다.

”

오죽 칠칠하면 아내를 때리고 아이들 앞에서 고소를 당하겠는가 하는 한탄에 앞서 아내를 아내답게 만드는 지혜에도 머리를 쓰라고 당부하고 싶다. 세계를 휘어잡는 사람은 남자, 이 남자를 휘어잡는 사람은 이 남자의 아내라는 말도 있다. 손 못 대는 남편으로 길들이는 지혜를 아내도 슬기롭게 터득함이 현명할 것이다. 가정이 사회법으로 다스려지게 된다면, 더 이상 가정은 아름다운 가정일 수가 없게 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세세는 바뀌었고 세속도 변했다. 그러므로 이에 상응하여 평등한 인간존엄원칙대로 여성의 법적미보호상황은 개선되어야 하겠다는 입장을 우리는 차체에 분명히 밝힌다.

”

변호사 李海鎮(이해진)씨(45)는 "부부간의 다툼이 가정내에서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는 현상은 시부모등 집안의 중재역을 할만한 어른이 없는데 가장 큰 원인이 있다고 본다"고 진단하고 "집안에 어른이 있으면 부부서로가 심리적으로 제약을 받아 감정을 억제하려는 노력을 하게 되고, 한쪽이 일방적으로 억울한 때는 하소연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핵가족의 경우는 가정내에 이런 완충역이 없다"고 지적했다.

李(이)변호사는 또 "부부싸움이 한번 법정문제화하면 화해가 돼도 파경을 하고 마는 경우가 흔하다"며 "부부싸움은 『갈로 물베기』로 안방안에서 끝나도록 부부가 더욱 참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회사원 具聖會(구성회)씨(24제일합성판촉과)는 "부인이 남편을 고소, 가정문제의 해결을 법정에 부탁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명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잘라말했다.

具(구)씨는 "가장 좋은 방법은 대화이겠지만 그런 가정분위기가 못되고 남편의 폭행이 심하면 잠시 별거를 해서 냉각기를 갖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하며 굳이 법정으로까지 문제를 번지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못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여성들은 최근 크리스천 아카데미가 조사한 자료에서 남편에게 매맞은 경험에 있는 부인이 조사대상자의 42%나 됐던 점을 들며 가정의 폭력도 좀 강 한 방법으로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983.7.20. 경향신문





한걸음 더 나아가 불가불 집안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사건건 거리의 광패사건처럼 경찰이나 법정으로 이 문제를 비화시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 해볼 필요가 있다.

집안에서의 부부싸움이 지나쳐 폭력으로 치달은것을 거리 광패의 그것과같은 차원에서 평면적으로만 풀이하기는어려지않을까. 그문제가 법정으로 옮겨지게 된다는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더 많기때문 이다.

집안일을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으로 가지고간다는 것은 사실상 가정의 와해를 뜻한다. 최악의경우에야 법정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막을길이 없겠으나 적어도 어느단계까지는 大(대)를위해 小(소)를 희생시킴으로써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계기를잡으려는노력을 기울일필요가 있을것이다. 가정의 두기동인 부부는 자신의 앞날은 말할것도없고 자녀의 앞날을 진지하고 참을성있게 생각해야한다.

### 社說

## 家庭의 和平

— 家庭의 和平을 위한 法廷問題化만이 아니라 解決을 위한 努力도 필요함 —

우려되는 바는, 가정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가정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가정의 문제를 법정으로 끌어들여, 법정에서 해결하려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핵가족화가 급속도로 진행됨에 따라부부싸움이 일어날 경우 이를 막을 완충지역이 없어졌다는 풀이도 있다. 핵가족화는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부부는더 많은 자제와 인내심을 발휘하여 완충구실을 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부부싸움결과를 일시적인 감정으로 법정문제화 하는데 따른 得失(득실)을 조심스럽게 저울질 해봐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고소를 했겠느냐란 말은, 오죽했으면 폭행까지 했겠느냐란 말과도 맥락을 같이할수 있을 것이다.

상호간에 도저히구제불능이라는 결심이 선다면 우선 형사문제보다는 가정법원쪽으로 가는 것이 차라리 피차를위해도움이 물론이다. 지구상에서는 어떤형태의것이든 하루도 끊임없이 없이 싸움이 계속되고있다. 그러나 局地戰(국지전)에서는 局地戰(국지전)방식으로 싸우는 것이옳다. 핵폭탄은 局地戰(국지전)에서 쓰이는것이 아니다. 局地(국지)전에서 핵은 쓰지 않는것이 전쟁의모형이다.



집안싸움에도 그런 모험이 있는것이아닌가 싶다. 물론 폭행을 하는 쪽을두면 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그렇다고부부싸움이 걸핏하면 법정문제로 비화하는 이 현실을 묵과할수도 없는일이다. 가정을 불가침의 성곽으로 생각하고 웬만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해결했던전통적인 동양사상을 고루한것이라고일축해서는 안된다.

즉흥적으로 순간순간을 편리하게만살아가려는 서양의 비인간적인 合理主義(합리주의)정신을 만능인것처럼 착각해서도 안될것이다. 부부싸움이 「갈로 물 베기」 가아니라 「法(법)으로 결판」 을 내야할 지경에이른다면 그것은 분명히 비극이다. 동양의 윤리관 가운데 긍정적인 부분을 새로이 살려 궁극적으로 모든 가정의 和平(화평)이 나라의 번영과 직결된다는 인식을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 '국지전' '핵폭탄' 도입과정과 그 결과

지난 1년간 폭력 경험 이후 각 대상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험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없음	있음						
			경찰	가족이나 친척	이웃이나 친구	종교 지도자	여성 긴급전화 1366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쉼터 (입소시설)	기타
전체	422	92.3	0.8	3.9	3.3	-	1.2	0.3	-
여성	319	89.7	0.9	5.6	4.8	-	1.4	0.5	-
남성	103	96.7	0.7	1.2	0.8	-	0.7	-	-

주: '없음'은 모든 항목에서 '없다'를 선택하였음을 의미함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폭력발생이후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1+2순위)

(단위: 명, %)

구분	응답 인원	이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전체	416	4.9	4.3	3.9	4.6	6.1	25.2	3.2	56.7	20.6	66.2	4.4
여성	314	5.5	3.5	3.9	5.0	8.8	28.4	2.2	54.1	22.9	61.5	4.3
남성	102	3.8	5.6	3.8	4.0	1.6	19.9	4.8	61.0	16.8	74.0	4.6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22

# '국지전' '핵폭탄' 도입과정과 그 결과

가정폭력사건처리현황

기간	접수	처리 현황							
		처분계	기소		불기소		기타		가정보호 사건승치율
			기소계	기소율	불기소계	불기소율	기타계	가정보호 사건승치	
2011	2,939	2,942	529	18.0%	1,997	67.9%	416	384	13.1%
2012	3,154	3,159	469	14.8%	2,006	63.5%	684	629	19.9%
2013	17,191	17,131	2,574	15.0%	10,080	58.8%	4,477	4,238	23.7%
2014	23,527	23,457	3,125	13.3%	12,688	54.1%	7,644	7,185	30.6%
2015	47,007	46,545	3,970	8.5%	23,437	50.4%	19,138	18,207	39.1%
2016	54,191	53,237	4,527	8.5%	27,273	51.2%	21,437	20,311	38.2%
2017	47,036	46,912	4,489	9.6%	23,298	49.7%	19,125	17,184	36.6%
2018	39,183	39,188	4,168	10.6%	18,962	48.4%	-	14,253	36.4%
2019	53,364	53,238	4,993	9.4%	25,441	47.8%	-	19,818	37.2%
2020	49,755	49,286	4,998	10.1%	23,966	48.6%	-	17,311	35.1%
2021.7	29,056	28,632	2,563	9.0%	11,912	41.6%	-	11,121	38.8%
계	366,403	363,727	36,405	10.0%	181,060	49.8%	-	130,641	35.9%

권익실 의원실, 2022년 법무부 제출자료, 2022.09.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  
도움을 요청해도 해결되지 않는 이유

무엇이 다른가.  
왜 그러한가.

## 가족, 무엇인가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개념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부양, 양육, 보호, 교육의 주체는 누구인가  
정서적 유대, 친밀성은 어떻게 형성되고 유지되는가

“정상, 가족, 제도,  
결국 제도화된 가족을  
필요로 하는,  
유지하고자 하는  
자는 누구인가 ”

-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을 은폐하게 하는 틀로서의 정상가족 제도
- 사랑, 돌봄, 훈육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상화
- 이를 위해
  - : 임금, 사회보장(복지), 돌봄, 주택, 가족법 등등
  - : 가족의 성립과 해체
  - : "정상"가족이 아닌 것에 대한 편견

# '가정 내 폭력'- 가족구성원은 누구인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1. 8. 4., 2012. 1. 17., 2014. 12. 30., 2016. 1. 6., 2020. 10. 20.>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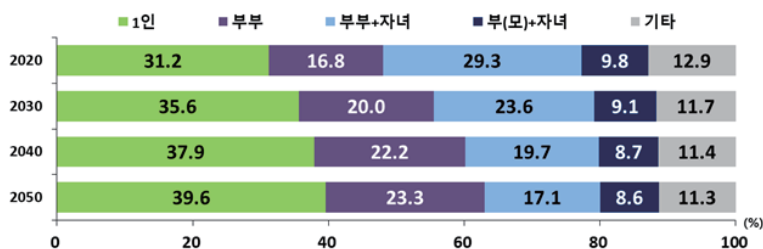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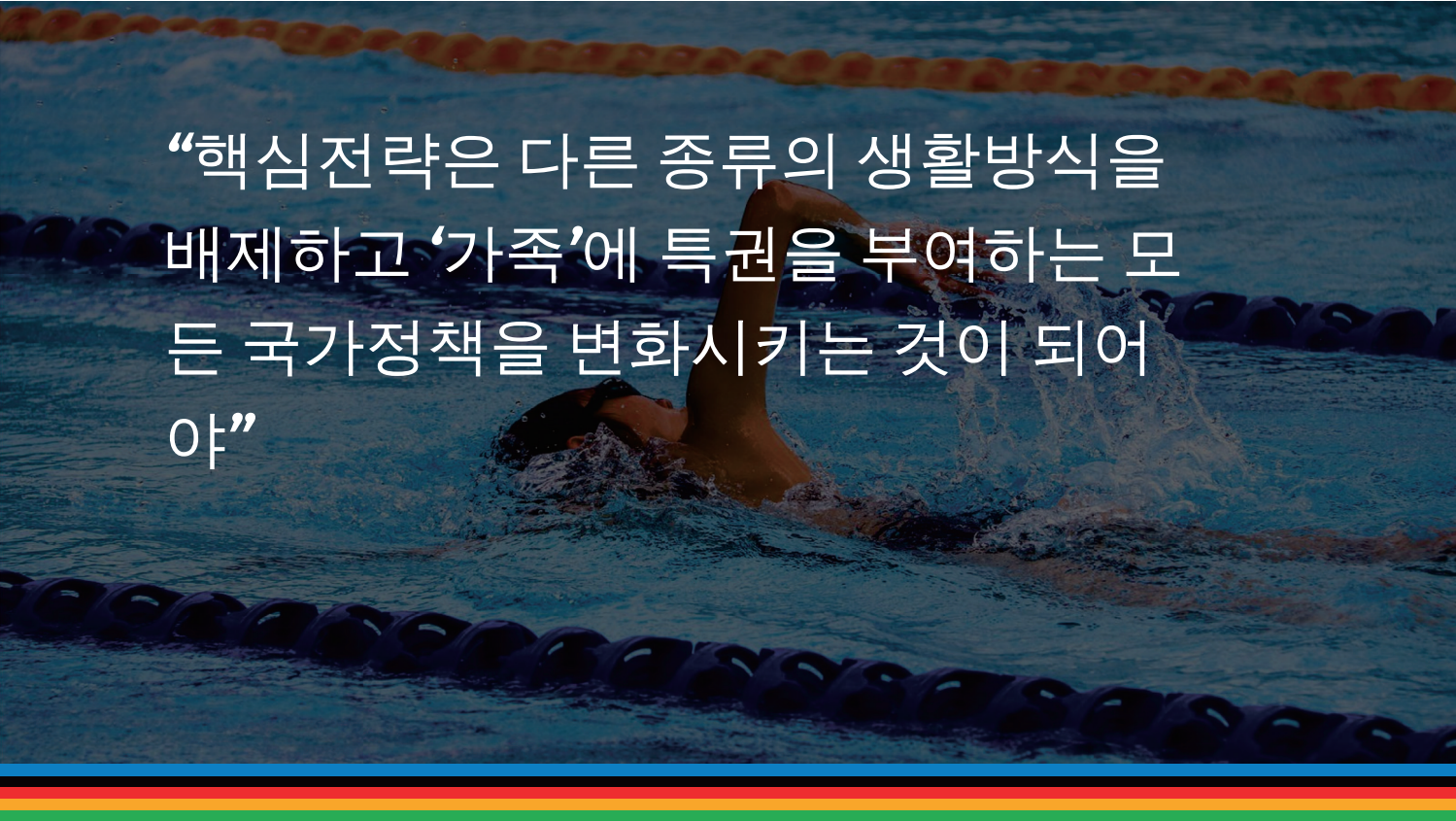
라. 동거하는 친족

# 지금, 가족구성은 어떻게 되는가

## 장래가구추계: 2020~2050년(통계청, 2022)



주요 가구유형별 구성비 추이, 2020-2050



“핵심전략은 다른 종류의 생활방식을  
배제하고 ‘가족’에 특권을 부여하는 모  
든 국가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이 되어  
야”

## 결국, '가정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가족의 실체에 직면하기

-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늘' 그런 곳만은 아니다
- 가족경험은 가족구성원의 성별, 나이 등에 따라 매우 다르다

가정 유지를 근간으로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목적조항 개정

사회복지정책집행의 대행자로서의 가정 기능 약화시키기

또 하나의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닌, 가족을 덜 필수적으로 만들기

## '정상가족'과 불화하며 새로운 시민적 유대 상상하기

유화정 가족구성권연구소 연구위원

### 들어가며

“가족의 정의 - 가족이란?”

“나에게 가족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와 가족이고 싶은가?”

### 1. 협소한 법적 가족의 범위

#### 1) 민법 제 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 2005년 개정 전 (구)민법 제 779조에서의 가족의 범위: ‘호주의 배우자, 혈족과 그 배우자 기타 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에 입적한 자는 가족이 된다.’

#### 2) 혈연과 혼인에 기반한 관계만 법적 가족으로 한정

- 그렇다면 그 외의 관계는 불법적 가족인가?
-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족/공동체 관계들
- 내가 의지하고 의존하는 상호돌봄의 관계가 법에 의해 정해져야 하는가?
- 가족은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특정 관계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호의존의 관계망을 포섭해야 함

### 2. '다양한' 가족의 함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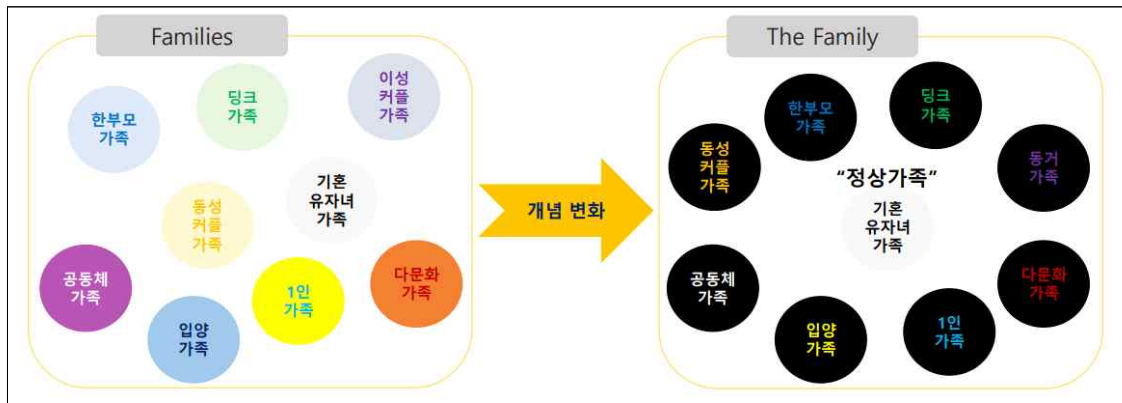
#### 1) '다양한 가족' 하면 떠오르는 것?

- 한부모 가족, 이혼/재혼 가족, 비혼 동거 커플, 성소수자 커플, 1인 가족, 다문화 가족 등

- 이성애 기혼 유자녀 가족은 어디에...?

2) 가족 다양성(family diversity) 개념 이해

- 가족 다양성 개념은 '가족은 근원적으로 다양함'(복수형태)을 강조(families)
- 따라서 "가족(families)=다양한 가족(diverse family)"
- 다양한 가족 개념 비교 및 이해



3. 정상가족과의 불화

1) 비판적 맥락에서의 '정상가족'과의 불화 징후

- 다양한 관계/공동체/가족 출현
- 1인가구 급증, 비혼 인구 증가, 비혼 출산, 성소수자 친밀 관계 가시화 등
- 이미 개인들은 개인의 욕구와 상황에 맞는 다양한 관계맺기 실천
- 의미: 생애모델의 다변화, 관계양식의 유동성 증대 → 허구적 가족 정상성 균열

2) 저항의 언어로서의 '가족'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와 폐쇄적 가족주의로 인해 드러나지 않는 친족 성폭력의 문제
- 가족을 해체하고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상가족과 불화하고, 해체와 재구성을 반복하여 국가로부터 호명 받은 가족이 아닌, 나의 상황과 욕구를 반영한 가족을 구성하자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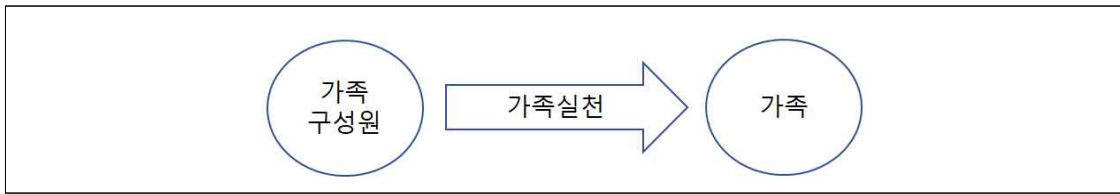
3) 따라서, 이제는 '가족 다양성'을 넘어 '가족구성권'을 논의해야할 시점

- 가족구성권이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
- 가족의 의미, 가족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4.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1) 가족 실천(family practices)(David Morgan, 1996, 2011)

- 가족은 거주지, 혈연, 법체계에 의해 정의된 고정된 범주나 구조가 아니다. 사람은 복잡하고 유동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구성원들의 가족실천을 통해 구성된다.



- 가족실천이란 가족이기 때문에 하는 행위들, 실천들을 의미
- 가족실천의 핵심: 친밀성, 돌봄, 부양

## 2) 가족실천 관점의 중요성

- 동사적 의미로서의 가족실천은 현재 가족에 대한 의미를 질문하게 함
- 즉, 가족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가족의 실천 속에서 가능함
- 의의: 생애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가족을 실천하는 '개인'에 주목할 수 있음

## 5. '이성에 정상가족 제도'를 벗어나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만들어내는 시민적 유대의 가능성

### 1) 법과 제도의 변화

- 서울시 1인가구 지원 조례 ... 서울시 사회적 가족(가족구성권연구소, 2019)
- 생활동반자법 발의(2023.4.26.)
- 가족구성권 3법 발의(2023.5.31.)

### 2) 이미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들 - 새로운 관계, 돌봄, 연결을 만들어내는 시민적 유대

- 2000년대 호주제 폐지 이후 정상가족과 불화하는 삶을 모색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됨
- 협소한 법적 가족 범위로 인해 개인이 맺고 의지하는 관계를 인정받지 못하는 차별 지속
-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안에서 비정상 관계를 맺은 비정상 시민들은 가족제도의 불평등을 폐지하고자 하는 새로운 주체들로 등장
- 탈시설 운동, 청소년/퀴어의 탈가정/탈학교 움직임, 성소수자/청소년 주거권 운동, 성별 이분법에 저항하는 트랜스젠더/퀴어 운동 등 여러 방향에서 기존의 가족제도를 떠난 시민들이 새로운 소속, 관계,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
- 결국 가족을 구성할 권리는 단순히 가족 개념과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유대를 맺고 상호의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재생산 정의'를 향한 사회권 실현에 대한 논의

### 3) 새로운 시민적 유대

- 국내 사례: 주거공동체 가족, 네트워크 공동체 가족
- 해외 사례: 연명의료결정법 대리인 제도, 의료결정 대리인 제도
- 의료결정 대리인 제도:  
(요건) 자신의 평소 생각과 신념을 잘 알고있는 친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  
(호주 빅토리아주, 영국, 미국의 18세 이상인 자는 자신을 대신하여 의료결정을 내릴 자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단, 건강관련 기관 이해관계자 제외
- 미국 정부부별 유급 가족돌봄휴가에서의 가족 범주

구분	가족돌봄휴가 대상 가족 범주
로드아일랜드주	자녀, 배우자, 부모, 배우자의 부모, <b>등록동반자</b> , 조부모
캘리포니아주	자녀, 부모,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 <b>등록동반자</b> , 배우자의 부모
뉴저지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 손자녀, 조부모, <b>등록동반자</b> , 시민연대 파트너, 혈연관계에 있는 자, <b>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b>
뉴욕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b>동거인</b> , 형제자매
워싱턴 D.C.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b>등록동반자</b>
워싱턴주	자녀, <b>동거인</b> , 손자녀,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b>등록동반자의 부모</b> , 형제자매, 배우자, <b>등록동반자</b> , 근로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자로서 근로자의 돌봄을 받는 자, 근로자와의 관계 속에서 근로자로부터 돌봄이 기대되는 자
매사추세츠주	배우자, <b>동거인</b> , 자녀, 부모, 배우자/ <b>동거인의 부모</b> ,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
코네티컷주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혈연관계에 있는 자, <b>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b>
오레곤주	배우자, <b>등록동반자</b> , 형제자매, 자녀, 자녀의 배우자, <b>동거인</b> , 조부모, 손자녀, 부모, 배우자/ <b>등록동반자의 부모</b> , 혈연관계에 있는 자, <b>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b>
콜로라도주	자녀, 부모, 배우자/ <b>동거인의 부모</b> , 배우자, <b>동거인</b> , 조부모, 배우자/ <b>동거인의 조부모</b> , 손자녀, 배우자/ <b>동거인의 손자녀</b> , 형제자매, 배우자/ <b>동거인의 형제자매</b> , <b>가족과 같이 친밀한 자</b>
메릴랜드주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법정 후견인, 배우자, 조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출처: 허민숙(2022) 가족다양성의 현실과 정책과제: 비친족 친밀한 관계의 가족 인정 필요성. NARS 현안분석 제 251호, 국회입법조사처.

## 참고문헌

- 가족구성권연구소(2019) 서울시 사회적 가족의 지위 보장 및 지원방안 연구. 서울특별시의회.  
 김순남(2022) 가족을 구성할 권리. 오월의 봄.  
 김지혜(2023) 가족각본. 창비.  
 소피 루이스(2023) 가족을 폐지하라. 성원 옮김. 서해문집.

## 함께 이야기하기

**플로어A** 안녕하세요? 저는 공폐단단 활동가인데요. 제가 최근에 공폐단단 소개하면서 피드백을 받게 있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광화문 거리 쪽 하면서 축제한 거를 보신 어떤 분이 누가 저거를 보냐고 했더니 가족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였다고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정상 가족 해체하라고 피켓 들고 그랬을 때 건강한 가족에 매달리는 많은 사람들이 약간 반발심?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톤의 시위를... 그렇게 조금 다가갈 수 있을까, 그 이후로 저는 계속 고민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저희가 계속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같이 고민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회자** 여기에 대해서 공폐단단 활동가로서 이경 님은 혹시 이런 의견에 대한, 정상 가족 제도 속에서, 이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나 정상가족에 반발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심이경** 여기 공폐단단 멤버들 많이 오셨는데 혹시 의견 주실 분 계세요?

**플로어B** 개인이 건강해야 가족도 건강해질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심이경** 개인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플로어B** 탄탄한 개인이 모여야 탄탄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거라서 가족의 해체 그런 것만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로어C** 가해자가 있는 가족이 정상이나? 가해자가 없는 가족이어야 한다면. 친족성폭력이라는 게 가해자가 드러나지 않게 되는 거고 범죄라고 아예 인식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정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친족성폭력이라고 한다면 여기 한국여성의전화에서도 차별 등 이런 키워드로 가족에 대한 차별과 개인 간의 평등에 대해서 키워드를 잡아주셔서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 폭력 안에 성폭력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키워드를 잡아 주시는 부분이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저는 부탁하고 싶었는데 먼저 말씀을 해 주셨고요. 친족성폭력 운동은 그냥 가해자를 드러내기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범죄다라는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족을 먼저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해자가 없는 가족을 위한 진짜 정상적인 가족을 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로어D** 선거에도 많이 마케팅을 이용하는데 제가 미국에서 트럼프 대선을 봤을 때 트럼프가 사용하는 단어들의 수준이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이라는 글을 봤고요. 그에 비해 바이든이나 오바마는 중학교 2학년 수준의 단어를 구사했다는 그런 글을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이야기가 사람들이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의 카피는 굉장히 우리의 생각보다 낮다라는 요점의 글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가족의 해체, 정상 가족 해방 이런 이야기를, 그런 피켓을 봤을 때 이런 맥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 저 사람들 가족 혐오자들이구나라고 생각하기 너무 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공감 능력이라든지 감수성이 아주 많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게 저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자극적이지만 모두가 더 공감을 할 수 있는 단어를, 그거를 되게 많이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서 그 방향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그렇게 느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회자** 혹시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실까요?

**플로어E** 안녕하세요? 저도 공폐단단 활동을 하고 있는 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이런 관점에서 친족성폭력이나 가족 문제를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인데요. 약간 우리가 공부하거나 발전하려고 하는 페미니즘이나 개인 권리 문제들이 사실 인식이 서양권에서 많이 넘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시아와 서양의 '개인'이라는 존재가 가진 권리의 개념이 되게 차이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서양의 가치관을 가져가서 우리 동양의 조금 더 가부장적이고 조금 더 집단주의적인 사고와 충돌을 했을 때 아까 처음에 질문 있었던 것처럼 굉장히 급진적이고 사회를 어떻게 접목하는 식으로도 보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유튜브에서 본 건데, 조금 인상적인 말이 동양인은 서로를 너무 테이크 케어(take care)한다는 말이었어요. 케어의 범위가 되게 눈치껏 챙겨주다라는 개념이 서양과 완전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조금 더 이렇게 피해자 위주의 발전적인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발제에서도 가정 지원이나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인 스페이스의 개념이나 어떤 사람이 결국 어떤 사람으로 있는 게 사회적인 존재로서 바람직한가. 그리고 그 바람직한 존재가 가진 가치가 우리 사회가 수호할 만한 가치다라고 인식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고 되게 핵심적인 문제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도 어떨까.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단어의 의미가 가진 가치가 왔다 갔다 한 단 말이에요. 가정, 사랑 이런 거. 그리고 가해자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애정 표현이라든지 실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실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인간의 권리가 법으로 수호할 수 있는 가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인간이 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간이 최종적으로 되어야 이상적인 가족을 형성할 수 있는 인간이 되는가, 이런 관점 속에서도 문제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의견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 분들도 알려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로어F** 송란희 대표님께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보면 저희가 근절하기 위한 방법 중에 사회 복지 정책 집행의 대행자로서 가정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게 좋을까요? 저희가 공소시효 폐지를 이야기하긴 하는데 가족을 깨긴 쉽지 않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래도록 친족성폭력 특징이 지속 방법, 은폐인데 그건 가해자가 했다면 친족성폭력 피해 생존자로서는 공론화도 조금 막막하기도 했고, 사회 복지 쪽으로 간다면 어떤 게 더 좋은 게 있을지 한번 말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송란희** 돌봄으로 이야기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아이를 키우거나 아픈 사람을 간호하거나 이런 게 완전히 가정에서 다 해야 하는 일로 되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주로 책임지는 것은 또 그 가정의 여성이 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이 여성은 밖에 나가서 돈을 버는 것보다 집에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소중하고 이런 식의 학습화가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던 게 사실인데.

사실 저는 우리가 성평등 운동을 해 왔던 거, 그리고 이렇게 성폭력 문제나 가정 폭력 문제를 제기했던 거.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점점 사실 그런 기능들이 ,가정과 사회를 구분해서 말하긴 싫은데,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현대 사회의 역할을 조금 더 부과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훨씬 더 많이 공공의 자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개인의 집에서 사람들을 케어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사회가 더 많이 케어해야 한다면 쉽게 말하면 국공립은 어린이집이 점점 더 많아져야 하고 간병하는 것도 조금 더 많이 되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왜 가족이 필요한가 조금 덜 생각하게 할 것 같거든요.

저희도 사실은 물론 가족과 불화하거나 이런 것과 별개로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이럴 때 늙으면 어떻게 되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걱정할 때 저희가 답으로 하는 게 그럴 때 대통령을 바꾸고 사회 복지를 강화시키고 이런 거로 해결할 수 있지 않겠니? 그게 더 빠를 거야. 우리가 적당한 돌봄 파트너를 구하는 것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게 모두를 위해서 훨씬 더 좋은 방식일 것 같아요. 가족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는 거 있잖아요. 일단 필요에 의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단체는 이혼 조장 단체로 일반화가 되어 있는데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더 많은 분을 이혼시키지 못한 게. 거칠긴 한데, 이걸 본인이 선택하는 일이긴 한데 농담으로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본인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는 5월이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때 가정 폭력 없는 평화의 달

이런 이상한 캠페인을 계속해 왔거든요. 가정의 달이니깐 그런 캠페인을 해야 한다. 그래서 공원에 어린이들이 풍선하고 예쁜 거 뭐죠? 비눗방울 이런 거 하고 그런데 옆에서 흠뻑으로 가정 폭력 근절, 사인하고 가세요. 이런 거를 하는데 그게 인기는 없지만 저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그런 톤과 매너를 가진 사람들도 있어야 하지 않겠나.

그래서 한 번은 저희가 그런 가족 필요 없다 이런 거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집에 우리 회원 집에 그런 가족 필요 없다, 이거를 봤대요. 그랬더니 가족들이 이제 이 사람을 슬금슬금 무슨 나한테 불만이 있었니? 이런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그 집안의 여러 가지 불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지만 그런 가족 필요 없다 이따만한 피켓이 반짝반짝하니깐 사람들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국에 지부도 있으니까, 지부 선생님들이 이걸 지역에서 쓰기 힘들다, 이래서 이런 가족이 필요하다고 세트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 가족 필요 없다, 이런 가족 필요하다. 저는 제 톤앤매너에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하나로 밀고 가야 하는 건데. 그런데 이런 가족 필요하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훨씬 부드럽게 이거에 대해서 참여하게 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드럽게도 하고 세계도 하고 이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유화정

저도 곁들여서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보통 현장에서 강의를 많이 하는데 몇 년 전, 코로나 전에 부산 지역의 모 대학에 강의를 간 적이 있었어요. 페미니즘 개괄식으로 해달라고 해서 대학생 무슨 과 학생들, 학교 학생들 수업에 60명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시기에 했던 수업권에서 했던 대학생 대상 페미니즘 강의와 너무 달라서 언어가 달라서 내가 부산말을 안 해서 잘 못 알아듣나 할 정도로 학생들 태도가 처음 제가 들어와서 담당 선생님이 오늘 어떤 강의를 할 거다, 어떤 사람들과 소개를 하자마자 학생들 태도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학생, 남학생, 앞에 앉은 학생, 뒤에 앉은 학생 상관없이 60명 중 57명 정도가 그렇게 하고 그중의 한 두어 명 정도는 앞에서 반짝반짝해 주고 맨 뒤에서는 또 의도적으로 카톡하고 휴대전화 하는 거를 일부러 더 보여주고 자세도 삐딱하게 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운동하기 어렵다고 하신 것들이 이런 거겠구나. 일단 전 연령에서 세고 20대도 이럴 정도면 그 이상 나이 많은 분들 대상으로 뭔가 하기 정말 어렵겠구나. 그래도 그 지역의 대학의 20대 초반 학생들이면 그 동네에서는 가장 그래도 강의를 할 만한 대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고 운동하시는 활동가 선생님들이 저한테 제 표정을 보고 저를 많이 위로하셨어요. 이런 적 처음이시죠? 저희는 익숙해요. 많이 놀라셨죠? 그런 위로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 주시는 거에 약간 울컥하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어떤 구호나 이런 것들이 그냥 생각했을 때 지역마다 조금 전략적으로 차이를 두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구호가 예를 들면 3년 뒤에는 되게 진하게 먹힐 수가 있는데 그 해에는 조금 더 잘 먹히는 건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역이나 어떤 대상, 연령이나 시기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잠깐 해 봤습니다.

#### 사회자

공페단단도, 저희 한국성폭력상담소도 5월 8일 어버이날에 맞춰서 항상 캠페인을 하거나 영상을 만든다거나 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요. 공페단단과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어떤 식

으로 말 걸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또 질문하실 분들 있을까요?

**플로어G** 안녕하세요? 저는 가족구성권연구소 유화정 연구위원님께 궁금한 건데 자료가 황민수 연구관님이 써주신 것이어서 질문이 정확히 맞지 않을 것 같은데 만들어진 자료에서 보면 뒤의 페이지를 보면 새로운 시민적 유대 관련해서 표를 올려주셨었는데요. 저는 궁금했었던 단어가 뉴저지주 보면 시민 연대 파트너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연구위원님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혹시 시민 연대 파트너라는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만약에 모르신다면 우리가 이 시민 연대 파트너라는 단어를 가지고 무엇을 상상해 볼 수 있을지. 저는 매력적인 단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모두가 시민 연대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단어에 대해서 같이 탐색해 보고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워싱턴주에 또 보면 근로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 등등의 말들이 있는데 이 단어의 의미는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다른 주에서는 나오지 않는 단어였기 때문에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혹시 우리가 근로자이지만 돌봄을 하고 있는 여러 직업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가족 돌봄 휴가 대상에 함께 포함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혹시 만약에 모르신다고 하시더라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 단어는 우리가 이렇게 국내에서 참고해서 활용하면 참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정** 이 표는 하단에 여러분, 네이버나 포털을 치시면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왜냐하면 이 보고서에 이 표만 달랑 있는 게 아니라 여덟 페이지 정도의 흐름이 있었거든요. 그중 제가 표를 떼온 거고요. 일단 제가 시민 연대 파트너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생활동반자법이 프랑스나 미국이 각 주별로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등록 동반자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프랑스가 시민 연대 파트너라는 말을 쓰고 있거든요, 번역을 굳이 하면? 뉴저지주 같은 경우에는 동반자도 있고 이게 단순히 용어의 차이는 아니라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확실하지는 않아서 제가 여기서 즉답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 용어에 대한 고민이 많이 있죠. 한국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됐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단체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국에서는 일단 생활동반자라는 명칭으로 지금 운동을 꾸려가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고 추후에 이야기를 드릴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그다음에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집에 정기적으로 거주하는...이것도 제가 자세하게 모르지만 앞에 보시면 미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건강 관련 이해관계자를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나면, 예를 들면 요양 보호사. 한국에서도 방문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간병인이라든가 요양 보호사는 아닐 테고요. 다만 그냥 우리 집에 자주 오는, 예를 들면 친구. 이런 사람이 아닐까? 혹은 어떤 돌봄을 기대할 수 있는, 조금 더 확대하자면. 아마 그런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래부터 이랬던 게 아니라 계속 그 범위가 확장된 거예요. 원래는 혼인과 혈연에 기반한 관계에서 유급 휴가를 주다가 이것이 확장되어서 이렇게 나온 건데요.

이제 국내에서도 일부 기관이나 혹은 사회 기업에서도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한 기관에서는 우리가 결혼하고 신혼 여행 가는 거. 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신혼 여행이나 혹은 결혼하고 며칠 쉬잖아요. 결혼식하고 신혼 여행 가니까. 그런데 그거를 예전에는 당연히 이성의 관계만 가능한 것으로 했었는데, 어떤 사례를 보니까 동성간의 관계인데 그냥 청첩장만 내면 가능하게. 그래서 그냥 나는 직장 사람 우리 결혼식에 부르고 싶지 않다, 청첩장만 내겠다. 그것으로만 승인이 되어서 아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처리가 되고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휴가 처리해 주는 게 아주 조금씩 생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들이 전혀 없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이 요구 사례를 보거나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에 기대의 마음을 담아봤습니다.

**송란희** 아마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나라마다 다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친밀한 관계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하고 폐쇄적으로 보는데 다른 나라는 법률도 가정 폭력 법률이 아니라 친밀한 관계에 있는 파트너에 의한 폭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관계를 점점 확장시키고 있는데 여기 돌봄 육아 대상 가족 범주처럼 동거인이라든가 이런 시민 연대 파트너라든가 또 어디는 애인 관계라든가 또 어디는 그냥 동거하는 사람도 넣기도 하고 되게 다양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저는 가족이 점점 확대되면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과정에 전 세계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이걸 확대하는 데가 빠르니까 저희도 그렇고 한국성폭력상담소도 그럴 것 같은데 내규를 바꾸는 것을 하잖아요? 저희 단체도 돌봄 휴가가 있는데 친밀한 관계인 사람을 돌봄 필요가 있으니까. 되게 말도 안 되는 넓은 규정을 두고 있어요. 이 규정을 만들 때 우리가 토론했던 말이에요. 어떻게 알 거냐,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정도의 규모면 안다 그랬어요.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매일 같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구 만나고 누구랑 살고 다 아니까 그냥 그 정도는 우리가 안다. 그렇게 해서 최근에도 어떤 활동가가 돌봄 휴가를 본인이 동거하는 사람, 하여튼 그렇게 돌봄 휴가를 쓰기도 하고 기업도 그렇고 아마 적극적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플로어H** 저는 아까 가족 안에서 폭력, 성폭력을 문제화하는 게. 그러면서 가족을 문제화하는 게 급진적이기 어렵다는 말씀에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가족 안에서 성폭력이 있었다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들리는 방식은 가부장, 가부장이 가족을 보호해야 하는데 그런다고? 가족이라는 곳은 그런 데가 아닌데? 따뜻한 데인데 그런다고? 이런 프레임으로 수렴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을 어떻게 급진적으로 문제제기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저는 유화정 선생님 발제에서처럼 가족을 선택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과 살 수 있다, 원하는 사람과 가족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가족을 해체한다라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급진적으로 어떻게 보면 다가오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막 사람들이 인터넷에 싱글세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애 안 낳고 혼자 자유롭게 원하는 대로 살면 더 세금 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러니까 원하는 거를 사는 거, 선택하는 거, 이런 삶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걸. 그래서 가족을 이루지 않고 정상 가족을 이루지 않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구조적으로는 변동이 일어나고 있지만, 담론적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설득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아까 그런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이어서 선택한다고 했을 때 그게 부딪칠 수 있는 여러 반발들? 이런 게 생각나기도 해서 어떻게들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사회자** 굉장히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발제자분들 중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유화정** 저는 연구소가 처음에 가족구성원 연구 모임이라고 2010년도에 시작이 되어서 2019년부터 연구소로 발족을 해서 지금까지 해 오는데 그때 드러났던 전문 중 하나가 말하는 방향성은 정상 가족을 해체하자라는 건데 왜 계속 가족구성권, 가족이라는 단어 버리지 못하고 계시나요? 이 이야기가 들어왔었어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했었는데 제가 한 건 아니고 멤버들이 같이 했었는데. 우리가 해체하자는 거, 물론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죠. 어렸을 때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생각했던 그 이미지는 지금은 많이 달라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가족이라는 키워드가 법 조항이나 모든 정책에 다 들어가 있어서 그것을 완전히 드러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실은 어렵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다시 뒤집자는 거죠. 그러니까 껍데기는 내버려두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혼인과 혈연, 입양까지 같이 논의했을 때 말하는 정상 가족을 해체하고 가족이라는 개념을 다시 처음부터 접근하자.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가족이 진짜 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생각하면 가족의 이미지는 되게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했던 개념이 지금 이제 비판적으로 정상 가족, 비정상 가족을 나누고 건강 가족, 불건강 가족을 나누고 있는 시대인데. 그래서 저희 책에서,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저희 연구소에서 쓰신 건데 가족을 저항의 언어로 생각하자고 했던 게 저도 독자로서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울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 현장에서 어떤 분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선생님, 페미니즘이 굉장히 많이 오염되었고 사람들이 그거를 무조건적으로 혐오하고 싫어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활동하거나 대학에서 그런 거를 나 페미니스트예요라고 하기 어려운데 학교에서는 페미니즘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대체한다는 고민을 안 하고 계시나요? 제가 학교를 대표하고 있지도 않고요. 그런 논의를 하는 곳은 못 들어봤다.

그런데 우리가 과거를 떠올려보면 피어나는 단어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읽혀질 때, 그거를 다시 저항의 언어로 하나의 프라이드의 개념으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다시 저항의 언어로써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오해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허울처럼 여겼던 정상 가족이라고 말도 안 되는 허울을 없애자는 것인데 마치 가족 폐지주의자, 이혼 조장하는 단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그래서 저는 사실 연구 활동가이지만 전략이나 방향성은 잘 모르겠지만 그거는 송란희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때 그래, 이거 오염되었어. 다시 그것을 저항의 언어로 재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그 중심을 가지고 전략을 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송란희** 싱글세를 내라면 내야 되겠죠? 재산에 비례해서 내게 될 테니까 별로 안 낼 것 같은데. 저는 이게 타인의 삶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생태를 어떻게 파괴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싱글로 살면 애도 없고 너무 편하고 너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 그렇지 않고 애가 있고 정상 가족으로 살면 그 역할을 수행하는거 너무 피곤하지 않니? 억압 속에서 어떻게 그렇게 사니? 안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단순하게 비교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단순하게 이야기할까? 이런 거를 어떻게 더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야되지? 그러면 우리 삶의 모습을 더 많이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예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너무 사람들 진짜 기가 막힌 게 다 안다고 생각하고 가정 폭력도 가정 폭력 이렇게 다 아는 단어니까 다 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정말 모르거든요. 그거는 가족의 의미,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의 의미가 뭔지 접근하지 않으면, 복잡하게 생각해야 하는 문제들을 다 그렇게 단순하게 칼같이 정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게 하는 게 우리의 전략이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헛갈리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고 개괄적인 이야기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저는 정말 답답했거든요. 가정 내 폭력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가족이라는 게 사회 단위로 계속 이야기되면서 내 삶이 지워지고 이 안에서 성 역할을 끊임없이 수행하고 고정 관념을 재생산하고 기여하는 가족이라는 그게 너무 답답했고 그 문제가 폭력을 가능하게 하는 지점에 계속 있는데 가정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면 너무 갑자기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닌 것처럼 인지가 되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운동처럼 사고가 되고, 그래서 왜 이러지? 아니면 정말 이걸 증명하기 너무 어려서 이거를 모르는 척하려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중요하고도 급진적 의제로 만들까가 저는 지금도 숙제예요. 답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의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오늘처럼 이렇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 보고 패밀리가 아니라 패밀리즘인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그 언어를 얼마큼 접목시킬 수 있을지 저도 모르겠는데, 가족의 의미를 다른 의미로 만들어내고 이런 여러 가지 시도들이 결국에는 복잡하게 살자는 이야기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좀 가까이 데려다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저희가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는데, 꼭 이 질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아니면 마무리 소감 들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을까요?

**플로어**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고 가면 밤에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시간이 늦었지만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간담회가 사실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전략 찾기 간담회인데요. 오늘 간담회를 들으면서 제 안에 너무 부딪히는 게 있어서 세 분 모두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해 주신 말씀. 그러니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 그리고 정상 가족, 소위 말하는 이성애 정상 가족에게 부여된 특권을 다 없애는 것. 국가 정책으로 변화시키는 것. 그리고 어떤 새로운 시민적 연대를 상상하는 것, 이 세 가지 모두가 친족성폭력을 해결하는 목표랑 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운동이 어떻게 결합할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답답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제 안에.

계속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친족성폭력만을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것은 오늘 나오신 이 세 분들에게는 각각 어떤 의미일까? 예컨대 가족에게 특권을 부여하는 모든 국가 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을 어떤 운동의 지향점으로 삼고 계시는 송란희 대표님께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다시 어떤 가족을 불러오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미 사실 성폭력처벌법에 친족성폭력이라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 자체가 민법상 친족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 항에 사실상 친족 관계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그 사실상의 친족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법률상 가족과 가까운지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친족성폭력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해결 방안으로써 공소시효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가족을 해체시켜야 한다는 운동을 하고 있는 조건과 어떻게 닿아 있을 수 있을까? 가족을 다시 법으로 불러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계속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저희가 1차 간담회를 했을 때 조사관님이 오셔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미국의 경향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동 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는 폐지되었고 친족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는 강간 범죄. 모든 강간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가 태동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가지 못하고 특별히 더 친족, 한국성폭력상담소라는 곳에서 저도 일하고 있지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서 세 분 모두에게 의견을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심이경** 오매 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던 것 같아요. 왜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공소시효 폐지, 이쪽으로 가지 않고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전략을 잡았느냐? 그게 미성년자 강간에 대한 거랑은 또 가족 관계라는 거랑 얽히면서 친족 피해자가 갖는 특수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더 열악해지는. 그래서 저도 해외 입법 사례를 찾아볼 때 해외 입법 사례가 미성년자 강간 공소시효 폐지 쪽으로 많이 가니까 그게 더 쉬운 전략 아닐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오매 님도 친족성폭력이 심각한데 이게 너무 가시화되지 않으니까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라는 주제를 정해서 이 캠페인을 중점으로 해 보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1차 간담회 때 해 주셨고 저도 친족성폭력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입법 발의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의 불평등한 관계가 성인이 돼서도 이어지다가 성인이 되었을 때 친족 피해를 처음 입는 피해자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미성년자 때 강간 피해가 아니니까 심각하지 않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성인이 돼서 최초 피해를 입는 분들도 정말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거든요. 그래서 친족이라는 가족 관계의 특수성이 분명히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송란희** 저는 질문이 조금 새로웠는데 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서만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운동 방향,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부른 이유는 저희가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를 하고 싶는데 이 운동이 어떻게 닿을 수 있을까를 같이 이야기해 보자라는 말씀이었는데



**플로어** 그래서 선생님의 의견이 궁금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들리는지. 특별히 친족성폭력 공소시효를 폐지하자고 말하는 게 어떻게 들리시는지.

**송란희** 잘 들려요. 왜냐하면 저는 이 문제를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도 이야기하셨는데 너무나 오랫동안 이 문제를 다뤄왔어요. 이거를 특별히 지금처럼 공폐단단 같은 활동을 안 하니깐 잘 안 보이실 텐데, 가정 내 폭력은 모든 폭력의 총 집합체로서 있는데 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니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고 그리고 이야기를 못 하게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에 너무 달아 있고 너무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를 부수는 것은 피해자 개인한테도 저는 너무 필요한 일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당연히 같이 가야 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너무나 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유화정** 친족성폭력 관련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족구성권연구소를 섭외한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주제로 한정했을 때. 물론 저는 연구소 활동을 2016년부터 했고 그 전에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는 범위 내에서. 무슨 이야기냐면 친족성폭력 이거를 끌어내갈 때 이것이 친족 관계 안에서의 성폭력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한다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근원적인 구조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죠. 왜 이것이 어떻게 문제고, 이것이 왜 드러나지 않느냐? 그것은 한국의 특유의 감성적인 구조와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가 문제고 사실은 그 문제가 친족성폭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이거를 특정한 주제로 잡고 있고 이거를 간담회를 하면서 예를 들면 연구소에서 참석을 했고 앞으로 계속 많은 연구소, 단체들과 결합해서 운동을 쌓아가다 보면 이 운동의 반경이 어마어마해져서 시작은 작았겠지만 결국은 이것이 우리나라의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는, 우리가 맺고 소위 가족이라고 부르는 나의 그 중요한 소중한 관계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아마 오늘 이제 이렇게 시작이라고 말했지만, 아무튼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많은 단체와 저희 연구소와 이렇게 닿았으니까 앞으로 수많은 단체가 만나면서 이 태풍이 어마어마해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것이 시작은 친족성폭력이지만 굉장히 이것의 반경이 커져서 5년 뒤, 10년 뒤에 더 큰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플로어** 제가 덧붙이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미성년자 성폭력에 대한 그런 게 아니고 친족 내에서의 성폭력을 다뤄야 하나라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공폐단단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물론 그 안에서 가족을 상대로 고소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인이 된 후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30대, 40대, 50대가 되어서야 그거를 폭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가족 내에서 내가 친밀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 가족이 깨질까 봐. 그런 이유로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후에야 그거에 대해서 폭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너무 짧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의 아동 시절에 그거를 겪고 그다음에 한창 성인이 지난 뒤에야 인지를 하고 그거를 폭로할 수 있고 내가 자립의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거를 폭로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띄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친밀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거를 폭로할 때 다른 구성원들을 고려해서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 내에서 친족성폭력이라는 공소시효가 있다는 것 자체가 공소시효가 너무 짧기도 하고 그래서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네, 오늘 저는 2차 간담회까지 마무리하면서 기획을 굉장히 오래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늘 함께 와주신 분들도 이런 간담회의 취지와 중요성 같은 것을 함께 공감해 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나 좋은 이야기들 얻어가는 것 같아서 운동을 어떻게 해나갈까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 다른 발제자분들도 마무리 소감 짧게 나눠주면서 오늘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이경 선생님부터.

**심이경** 덕분에 저도 공부하는 기회가 돼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송란희** 저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친족성폭력의 피해자는 진짜 미성년 아동이 많지만 전부 성인이 되어서 처제 관계, 수많은 이런 친족 관계들에서도 성폭력이 일어나거든요. 이 문제는 똑같은, 비슷한 맥락이기도 한데 친족성폭력이라고 잘 인지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공소시효 문제나 이런 거를 이야기하면서 친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이런 게 조금 더 많이 알려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화정** 제가 이제 가족 구성권 주제로 오늘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혹시 준비한 자료나 이런 게 다 전달이 안 될까 봐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어요. 많은 건 아니고 이게 제가 받은 게 아니고 제가 산 거거든요. 그래서 한 권만 있어서 혹시 오늘 가족을 구성할 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드리고 싶은데 너무 많이 계셔서 제가 한 권이 초라한데요. 제가 쓴 건 아니고 저희 대표님이 쓰신 책인데 제가 강의나 이런 좋은 자리에 나올 때마다 혹시 말하는 게 부족해서 전달이 충분히 안 됐을까 봐 이렇게 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한 권을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 누구를 드릴까요?

**플로어** (플로어 중 한 사람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 책을 받다.) 감사합니다.

**사회자** 그러면 이렇게 훈훈하게 자리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가세요.

<b>펴낸곳</b>	(사)한국성폭력상담소
<b>펴낸이</b>	김혜정
<b>펴낸날</b>	2024년 1월 10일
<b>발표 속기</b>	허민숙, 장서연, 수수, 심이경, 송란희, 유화정 전승욱, 황윤우
<b>편집·내지 디자인</b>	유랑, 동은
<b>내지 폰트</b>	KoPub돋움체, 배달의민족 도현
<b>주소</b>	서울시 마포구 성지1길 32-42, 2층
<b>전화</b>	(상담) 02-338-5801 (사무) 02-338-2890
<b>이메일</b>	ksvrc@sisters.or.kr
<b>홈페이지</b>	www.sisters.or.kr